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1년 2월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논문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 실태 및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소 현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 실태 및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

A Study on Current Situations of Teacher' s Authority
Violation Experience Perception and Supporting Plans to
Protect Teacher' s Authority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2021년 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소 현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 실태 및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

지도교수 정 은 희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특수교육)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0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 소 현

김소현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김정연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허유성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은희 (인)

2020년 12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표목차	iii
그림목차	v
ABSTRACT	vi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교권의 개념	6
2. 교권침해의 개념 및 유형	9
3.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17
III. 연구방법	25
1. 연구 설계	25
2. 연구 참여자	25
3. 연구 도구	27
4. 연구 절차	30
5. 자료 처리	30
IV. 연구 결과	31
1. 교권침해 실태	31
2.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41
V. 논의	61
1.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논의	61
2.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에 대한 논의	64

VI. 결론 및 제언	70
1. 결론	70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72
참고문헌	73
부 록	77

표 목 차

〈표 II-1〉 시·도 조례안에서의 교권의 개념	8
〈표 II-2〉 2019년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10
〈표 II-3〉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 건수(2014~2018)	11
〈표 II-4〉 교권침해 주체의 원인 · 행위별 유형	12
〈표 II-5〉 선행연구 분석표	14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26
〈표 III-2〉 내용타당도 검증 후 예비문항 수정 보완	28
〈표 III-3〉 설문지 구성 내용	29
〈표 IV-1〉 교권침해 주체	31
〈표 IV-2〉 교권침해 수준 및 교권침해 경험의 횟수	32
〈표 IV-3〉 교권침해 유형	33
〈표 IV-4〉 교권침해 처리 상담기관 및 단체 인지여부 다중응답	34
〈표 IV-5〉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	34
〈표 IV-6〉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 다중응답	35
〈표 IV-7〉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36
〈표 IV-8〉 특수학급 학생수에 따른 학생의 교권침해 원인	36
〈표 IV-9〉 특수학급에서 학생의 교권침해 형태	37
〈표 IV-10〉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다중응답	38
〈표 IV-11〉 특수학급에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39
〈표 IV-12〉 교사성별에 따른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40
〈표 IV-13〉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40
〈표 IV-14〉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여부	41
〈표 IV-15〉 특수교사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여부	42
〈표 IV-16〉 특수교사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여부	42
〈표 IV-17〉 교육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여부	43

<표 IV-18> 특수교사 총교직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 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도	44
<표 IV-19>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45
<표 IV-20>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46
<표 IV-21> 총교직 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47
<표 IV-22>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평균차이	48
<표 IV-23> 총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평균차이	48
<표 IV-24>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해결 책임자	49
<표 IV-25>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해결 책임자	50
<표 IV-26>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50
<표 IV-27>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51
<표 IV-28> 특수학급 총교직 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52
<표 IV-29> 교권침해 발생 시 사후 대응 및 지원대책 다중응답	53
<표 IV-30>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처나 해결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	54
<표 IV-31>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55
<표 IV-32>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56
<표 IV-33>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57
<표 IV-34>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	58
<표 IV-35> 연령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	59
<표 IV-36>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위한 특수교사의 노력사항	59
<표 IV-37>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위한 학교의 노력사항	60

그림 목차

<그림 II-1> 교원지위법 변천 과정	18
<그림 II-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일반 철차	21
<그림 II-3> One Stop Service System	22

ABSTRACT

A Study on Current Situations of Teacher' s Authority Violation Experience Perception and Supporting Plans to Protect Teacher' s Authority of Special Education Classes

Kim, So Hyeon

Advisor : Prof. Jeong, Eun Hee

Major in Special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find out the current status and causes of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of special classes teachers in secondary school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as well as the recognition and support plans for the protection of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In addition,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 in perceptions on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and its support plans upon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eachers. To verify the research problem, this study distributed a questionnaire was to a total of 127 special class teachers in 55 middle schools and 79 schools in 24 schools belonging to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requested responses to such questionnaire. The total collected questionnaire was 92 copies and the recovery rate was about 73%, which was used for analysis of the results.

Using SPSS 22.0 program, this study used technical statistics such as

mean, standard deviation, and frequency for the status about awareness and support plan for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practice, and its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of teachers in charge of special classes, and analyzed by conducting independent sample t-ttest for x^2 verification and mean difference among groups through crossover analysis.

First, the actual state of the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can be divided into the subject and the cause, degree, place, and time of occurrence according to the subject. Parents accounted for the most subject of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followed by students. The degree of severity was more than five times higher for those who said they were more serious than those who said they were not. Teachers are experiencing serious trauma due to violent language and physical assault. Classrooms were most of the places where teacher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occurred with other opinions such as the classroom, the principal's office, and SNS. The occurrence time appeared in various forms such as class time, parent interviews, and student guidance, but the notable point is that the frequency of occurrence after work is high, so countermeasures are needed.

Second, it is possible to summarize the awareness degree of special teachers about the current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policy and additional support plans. First, when asked if they knew the basic plan for the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of teacher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Office of Education, more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answered that they don't know about it. In particular, the percentage of respondents who say they don't know in their 30's and younger teachers seems to need

policy education for low-career teachers. In the establishment of educational policy for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there were high responses to reflect the opinions of special teachers. For the question about the counseling institution and groups for handling of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to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the response was in the order of the school educational authority protection committee,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Teacher Rights Healing Support Center, and the educational authority counseling place of Korean Teachers and Educational Workers Union. On the other hand, the response that they do not know also shows a number that cannot be ignored, suggesting that there is a need to actively promote active publicity to counseling institutions and organizations dealing with teacher rights infringement, and to actively develop programs in connection with front-line schools. When asked how to deal with infringement of teaching authority, the response methods were different for each group. In the group with less than 10 years of educational experience and total teaching experience, they said that they would tolerate or do not take action, and in the group with more than 10 years, they follow the instruction after they report to their managers. In regard to this, in response to the reason why it is difficult to actively cope with and resolve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authority, the recognition of they being a special teacher was the highest. Next, it was found that there was insufficient coordination by school managers, and that it was to maintain a trust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students.

As for support plans related to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it was found that first of all, a social atmosphere that respects teachers should be strengthened to prevent and protect the infringement of teachers' rights. In the subgroup analysis for the subject to provide support necessary for the

teachers who experienced infringement of teaching authority, schools were selected most in the teachers in their under 30s,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the teachers in their over 30s. As for the efforts of teachers to prevent educational authority infringement and protection of educational authority, it was found that enhancement of expertise should be strengthened, while establishment of a department in charge of teaching rights and the coordination role of school managers. Therefore, this stud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in order to improve pride and self-esteem as a special teacher, it is necessary in reality to strengthen the role of coordination of school administrators by establishing a department in charge of educational authority as well as the Office of Education and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intensify the coordination role of school managers.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교권은 가르칠 교(敎), 권세 권(權)으로,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자주적으로 교육할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 교원은 학생을 교육할 법적인 권리뿐만 아니라 윤리적, 사회적 의미에 따른 전문적, 기술적인 권위의 복합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교권은 교원에게 주어지는 교육권이다. 하지만 과연 현장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교원들은 본인들에게 주어지는 교육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고 폭언 후, 교사를 폭행하여 전치 4주 상해', '수업이 시작하기 전 교실 칠판에 성적인 문구를 기록하여 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을 야기', '교사의 치마 속을 촬영한 후 친구들과 공유', '학생의 학교 부적응도 교사 잘못, 학부모 법적 시비 및 금품요구' 등 지난해 교권침해 문제로 발생한 사례들이다(매일경제신문, 2020. 07. 29.). 학생에게 맞고 성희롱당하며 학부모로부터 협박을 받는 교사들은 교육 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실제 이를 위한 보험상품이 등장해 많은 교사가 가입(에듀프레스, 2019. 03. 15.)한 상황이다.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 바탕이 되어야 할 교권, 우리 교육 현장에서 당연하게 존중받아 왔던 것이 이제는 도덕적 의미를 떠나 법률적인 해석을 명확히 해야 할 시대에 살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교사의 교육활동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시행한 “교권 신장을 위한 개혁입법과제 교사 의견조사 보고서(2012)”에 따르면 교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91.4%이다. 교사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교권침해의 심각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한국교육신문, 2016. 01. 04.). 또한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활동 보고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따르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 총 513건의 교권침해 상담 건수가 접수되었다. 2008년 249건으로 10년 전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최근 5년간 그

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교권침해 주체는 학부모가 절반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이 교직원에 의한 피해, 학생에 의한 피해의 순이었다.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인식한 국회가 지난 2015년 12월 교사의 교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교권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권보호법)」을 제정하였으며, 2016년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을 개정 발표하였다. 교사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교사의 대응 수단을 늘려 피해교사의 대응이 용이 하도록 2019년 10월 17일 「교원지위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그러나 교원들을 위한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교권에 대한 정의나 교권 침해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어 교원지위법으로 보호할 근거가 불분명하여 앞으로 일어날 문제뿐만 아니라, 후속 처리까지 여러 문제를 파생시킬 여지가 있다(조기성, 2019). 본 연구에서는 교육학에서 정의한 교권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권침해는 교육활동 중 여러 다양한 주체로부터 가르치는 일에서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교원단체 활동권을 간섭이나 침해받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실태가 어떠한지 선행연구를 통해 알아보면 특수교사의 약 80%가 신체적 공격을 학생으로부터 받았던 경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재철, 2011). 일반교사와 달리 뉴스를 통해 기사화되지 않았을 뿐 특수교사들의 신체적 상해에 대한 경험이 매우 많으며, 그런 상해에 대한 위험 노출이 매우 높다(김동일, 고혜경, 이윤희, 2012). 이는 장애학생들로 인한 특수교사의 교권침해는 교육활동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여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특수교육대상자 중 75.3%에 해당하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들(국립특수교육원, 2019)은 때때로 신체적이고 언어적인 공격, 자해행동, 파괴행동, 정형화된 행동, 이런 도전적 행동이 발생하면 발달장애인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해를 끼치거나 위협에 처하게 하는데(김미옥 외, 2017), 이러한 행동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다면 학교안전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와 관련하여 교사는 교권침해를 받기도 하는데(김부기, 2002; 김소연, 2007; 이진영, 2011), 이 과정에서 교사는 신체적인 상해뿐만 아니라 교사의 인권과 교육권침해로

인한 교육활동에도 영향을 받으며, 심리적인 문제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이소정, 2014).

현재 연구된 특수교사의 교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는 특수학교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한 학교 안전사고에 집중되어 있다. 학교 안전사고와 관련 선행연구(강병일, 김남진, 2010; 김소연, 2006; 김우현, 2011; 이진영, 2011)에서 특수교사의 근무지를 기준으로 대부분 지적장애 특수학교에서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교권침해의 형태 중에서도 장애학생의 문제행동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특수교사의 학교안전사고에 초점을 맞추어 주체가 장애학생으로 한정되어 있다(이화영, 2016). 즉 특수교사가 교권상실을 경험한 대상이 학생으로 한정되고 선행연구 역시 학생과의 관계에서 비롯한 안전사고 및 교사의 상해에만 제한되어 있어 특수교사의 교권상실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수교사의 교권상실의 실태와 관련하여 전국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특수교사는 25개의 교권상실 유형 중 1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1회 이상 교권상실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도경만, 2015). 이는 특수교사는 다양한 주체와 상황에서 교권침해를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권침해의 경험을 가진 특수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히 특수학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 도경만(2015)은 행정업무로 인한 수업시수 과다, 수업권침해, 수업방해, 교수학습기자재 구입 시 부당한 압력, 성폭력, 학생 돌봄 추가지원 강요, 욕설, 협박, 불리한 신분조치, 휴가사용 간섭, 교원단체 가입방해 부분에서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교 교사보다 교권상실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는 학교 전체 교육과정에 따라 운영되는 특수학교와 달리 일반학교의 연간학사일정과 장애 학생의 장애 수준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중·고등학교의 경우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해 급우들의 도움을 받거나 교사들의 집중적인 지원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수학급 운영, 교육과정 수립, 생활지도 등의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이화영, 2016). 도경만(2015)은 신분상 권리침해, 학생 교수권 침해 영역과 교육방법에 대한 간섭영역에서는 고등학교에

소속된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교권침해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등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특수교사의 교권침해에 관한 연구 역시 제한적이며 찾아보기 어렵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발표한 광주교육 종합실태 조사(2018) 내용 중 교권보호가 잘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전체의 절반을 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는 중학교가 가장 낮았다.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였고, 가장 심각한 교권침해는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였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가장 심각한 곳은 중학교였고 그 다음이 고등학교였다. 이는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상황에 대하여 좀 더 면밀히 알아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서울특별시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교권침해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이화영, 2016)는 이루어진 반면 광주광역시에서의 중등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에 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교권침해의 경험을 가진 특수교사들의 교권보호를 위한 구체적 지원에 관한 연구도 제한적이다.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이루어지는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한 후 그에 따른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중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교권침해 실태와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둔다.

2. 연구문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교권침해 실태는 어떠한고 교사의 변인(성별, 연령, 직급, 총교직경력, 특수교육 교직경력)에 따른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3. 용어의 정의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교권, 교권침해,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1) 교권

교권은 포괄하는 개념으로 교원의 권리와 권위를 모두 의미한다. 넓은 의미의 교권은 교육권을 의미하며 교사의 교육권,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교육권, 학교 설립자의 관리권, 국가 교육 감독권이 모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교권은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적 의미로 사용되며 가르침, 신분, 재산상 권리 및 교원단체 활동권으로 구분할 수 있다(교육학 용어사전, 1995). 본 연구에서도 교권은 특수교사가 직무수행을 하는 동안 신분상, 재산상, 가르치는 일에서의 권리로 정의하고자 한다.

2) 교권침해

본 연구에서는 교권을 교원의 교육권이라는 제한된 의미로 사용하기로 하여 교권침해란 중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특수학급에서 실시하는 교육활동 중 여러 다양한 주체로부터 가르치는 일에서의 권리, 재산상의 권리, 신분상의 권리, 교원단체 활동권을 간섭이나 침해받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3) 특수학급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시행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라 명시되어 있다(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19). 중등 특수학급이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일반 중·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급"이라고 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교권의 개념

교권의 의미는 사전적으로 정확하게 명시된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맞게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자에 따라 여러 의미로 정의되고 있다(정은혜, 2020). 교권에 대한 정의를 비교 및 분석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권을 ‘교사의 권리와 권위’로 구분하기도 하고 ‘두 개의 개념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교권’으로 나타내기도 하였다(김빛나라, 2012; 최인재, 2013; 최경실, 2015; 김민제, 2019). 문제는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도 단위 교권보호조례 제정이다. 기관별, 의원별 교권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여 이를 해석하는 학교현장의 입장에서는 모호할 수밖에 없다(2015, 도경만). 따라서 교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지 않거나 논의의 대상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교권의 보장 범위도 모호해질 위험이 있다(조기성, 정상우, 2017).

본 연구에서는 교권의 개념을 교사의 권리, 교사의 권위와 각 지자체 및 교육청에서 정의하는 교권으로 그 개념을 나누어보고자 한다.

1) 교사의 권리로서의 교권

교사의 권리를 넓은 의미의 개념인 교육상, 신분상, 재산상 권리로 구분하여 분류하였다. 교육상의 권리는 교사의 교육자유권으로 전문직으로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육과정상의 자율성을 포함하는 권리로 보았다(조수현, 2005). 교권이란 교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장받아야 할 사회적 신뢰와 인정, 신분보장과 생활의 안정, 교육활동의 자율성 등 사회적 지위에 관한 권익까지도 포함 할 수 있다. 교사의 권리 개념의 교권은 교직의 공공성에 근거하여 나오며, 교직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교

권을 보호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다 본다. 즉 교사의 역할 수행 및 교권보호를 위해서 교사에 대한 예우와 관련된 신분보장 및 기본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재산권과 관련된 것으로 대부분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최인재, 2013).

교권은 권력, 영향력의 개념과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교원의 권위는 정당한 권한을 의미한다. 권위는 만족을 기반으로 하고, 정치 지도자들의 영향력 또한 권위를 향한 경향이 있다. 정당한 권위는 믿을 수 있고 견고하며 리더십을 뒷받침해 준다. 이런 상태에서 교원의 권위는 합법성, 지배의 수단, 실체성, 합리성, 책임 등이 주요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Zohreh, Hosein, Abdolah, 2015).

선행연구를 종합하면 교사의 권리로서의 교권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같은 좁은 의미의 권리와 넓은 의미의 권리에 안정된 생활과 같은 재산상 보장과 신분을 보장하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2) 교사의 권위로서의 교권

교권은 교육권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인정받은 전문적 권위이기도 하다. 권위의 개념은 통제적 권위와 전문적 권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교원은 이러한 두 가지 방식의 권위를 모두 가지고 있다. 여기서 통제적 권위는 언어, 행위, 품격 등 사회적 규칙에 적용되고, 전문적 권위는 성취의 수월성과 관련됨을 의미한다.

교사의 권위는 교사로 하여금 학생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힘이라고 하였다(장영란, 2003). 교사의 권위는 효율적인 교육에 꼭 필요한 요소로써 교사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을 통해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또한 교사의 권위로서 교권은 학생을 지위하고 통솔하여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하였다(김빛나라, 2012). 교사의 권위란 교사라는 직책으로도 형성되지만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교수자의 역할을 수행할 때 학생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즉, 권위는 타인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며, 다른 사람의 지시나 명령에 대해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하는 것이다. 하여 교원의 권위라고 생각하는 교권은 학생들을 선도

하고 통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이를 본받아 따르게 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하였다(조기성, 2019).

3) 각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에서 정의하는 교권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자체 교권 관련 조례를 정하고 교권의 용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주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교사로서의 권위와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각 시·도 조례 안에서 교권의 개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표 II-1>과 같다.

<표 II-1> 시·도 조례 안에서의 교권의 개념

시·도 의회 (제정 또는 심의 통과일)	조례안 명칭	교권의 개념
인천 (2011.10.17.)	교권확립 현장 운영 조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해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
광주 (2012.1.9.)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

서울 (2012.6.25.)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 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 인된 국제법규에서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로서 교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와 교원의 직 무수행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
충청남도 (2012.7.20.)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 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 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
경기도 (2018.3.15.)	교권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교권’이란 교원이 교육활동을 할 때 존중받아야 할 권위와 법률이 보장하는 제반 권리

출처: 조기성(2019). p.35에서 발췌

2. 교권침해의 개념 및 유형

1) 교권침해

교권침해(敎權侵害)란, 교권에 반하는 행위로 교육행정기관, 상급자, 동료, 학부모, 학생 등이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하여 교사의 가르칠 권리(학생의 학습권 보장)와 사회 윤리적·전문적 권위를 침해 또는 무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20). 2016년 개정된 교원지위법에서 교권침해라는 개념적 용어 대신 교육활동 침해라는 행위적 용어를 명시함으로써 교원지위법의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교육활동 침해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하여 폭행, 모욕 등의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실질적으로 법률적 교권침해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의미함을 명시했다(교육부, 2017).

광주광역시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2020)에서 교권침해란 교권침해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이,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에 의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기본적인 인권 및 교육권 등 교원의 직무수행에 수반되는 모든 권한이 부당하게 간섭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 교권침해는 위에서 언급된 교육활동 수행에 관한 침해를 비롯하여 기본적인 인권 및 교육권 등 포괄적 의미인 한교총과 광주광역시에서 정의한 교권침해의 정의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한다.

2) 교권침해 현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0)에서 조사 발표한 교권침해 건수 또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최근 10년간 접수·상담 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대 초반까지 200건대였던 교권침해 건수가 2012년에 335건, 2014년 439건, 2016년에는 572건으로 2019년에는 다소 감소하기는 했으나 513건으로 500건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학교현장에서 교권침해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접수된 상담 건수를 가지고 낸 결과이므로 실제 교권침해를 당하고도 상담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하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으리라 생각된다.

<표 II-2> 2019년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

구분	학생에 의한 피해	학부모에 의한 피해	제 3자에 의한 피해	차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 피해	교직원에 의한 피해	계	2018년 통계
2019	1	1	1	8	0	11	5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0). p.10에서 발췌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이홍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11월 5일 열린 광주시 교육청 행정사무 감사에서 “광주시 교육청으로 받은 교권침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 동안 교권침해 건수는 489건이었고 그중 2019년 1학기에만 35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호남교육신문, 2019.11.19.). 이는 위 한교총에서 발표한 자료 <표 II-2>와 비교하여 수치상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부(2019)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시·도 교육청 제출 자료를 근거로 한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 건수를 보고하였다. 교권침해 조사를 시작한 이후로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현황 <표 II-3>을 살펴보면 5년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는 점차 줄어들긴 하나 그 수가 연간 2,000건을 넘고 있으며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의 경우는 점점 증가하여 5년 사이 3배 이상 그 수가 증가하였다.

<표 II-3> 연도별 교권침해 신고 건수 (2014~2018)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3,946	3,346	2,523	2,447	2,244
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침해	64	112	93	119	210
중 합	4,009	3,458	2,616	2,566	2,454

출처 : 교육부(2012), p.2에서 발췌

3) 교권침해 유형

법률에 입각한 교육활동 침해 유형에 대해 살펴보면 타 법률로 위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와 그 외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 구분한다. 이때 타 법률로 위법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행위는 상해·폭행, 모욕·명예 훼손, 협박, 손괴, 성폭력범죄, 정보통신이용 불법 정보 유통 등으로 법률에 입각하여 위법함을

판단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 외에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로는 수업 방해 및 지도 불응, 성적 언어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장이 그 전문적 지위나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하는 행위 등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교육행정기관, 학교관리자, 동료교원,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 보았다(교육부, 2017).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0)에서는 교육활동 침해 주체를 ‘학부모에 의한 피해’, ‘교직원에 의한 피해’, ‘학생에 의한 피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제3자에 의한 피해’로 크게 다섯 그룹의 주체로 나누고 그 다음 주체별 원인 또는 행위로 구분하여 유형별로 분석했다. 각 주체별 원인 또는 행위의 유형은 <표 II-4>와 같다.

<표 II-4> 교권침해 주체의 원인·행위별 유형

주체	유형	
	원인별 또는 행위별	
학생에 의한 피해	수업 방해	
	폭행	
	폭언·욕설	
	명예훼손	
	성희롱	
학부모에 의한 피해	학교안전사고	
	학교폭력	
	명예훼손	
	학생지도	
제 3자에 의한 피해	학교·급 등 경영간섭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처분권자에 의한 부당한 신분피해	학생지도 간섭	
	불합리한 처분	
	교육권 침해	
	징계처분	
교직원에 의한 피해	인사, 시설 등 학교 운영	
	학교·급 등 경영간섭	
	사생활 침해	
	학생지도 간섭	
	명예훼손	

출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0). p.12에서 발췌

도경만(2015)은 전국 시·도에 소속된 532명의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 실태 연구에서 교권침해 유형을 크게 학생 신분상 권리침해, 교수권 침해, 재산상 권리침해 3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중 학생 교수권 침해는 수업권 침해 · 교육과정 운영권 침해 · 학생생활 지도권 침해로, 신분상 권리 침해는 자유권 침해와 노동권 침해로, 재산상 권리 침해는 금전적 손해와 수당지급 차별로 세분화 하였다.

특수학교의 경우 일반초등학교 비슷하게 학교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교사가 동일한 과목으로 임용이 되어 학생들을 지도하고, 담임교사는 담당 학급에서 대부분의 수업과 업무 및 생활지도를 혼자서 진행하게 된다(양창훈, 2020). 따라서 성별 · 연령별 차이로 인한 업무차별(국립특수교육원, 2017)을 비롯한 학급운영에 대한 간섭, 학생 생활지도와 관련한 동료교사 간 갈등, 교내 인사와 시설관리에서의 문제가 발생한다(오주석, 2018). 그래서 동료교사나 관리자로부터 교권침해를 받는 유형이 초등학교와 비슷한 경우가 많다.

교권침해의 주체와 관련하여 특수학교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특이점은 바로 특수교육 보조 인력의 존재이다(양창훈, 2020). 이들은 장애학생의 교수 · 학습활동이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에 교사와 함께하는데 이 과정에서 교사와 특수교육 보조인력 사이에서 업무한계가 분명하지 않아 발생하는 갈등(양경숙, 2010), 특수교육 보조 인력이 무분별하게 학부모와 접촉하는 경우, 특수교사가 초임이거나 연령이 낮거나 경험이 부족하여 경험이 많은 특수교육 보조 인력과의 갈등(양윤희, 2017)에 의해 교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4) 특수교사 교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일반교사의 교권침해 관련하여 교권의 개념을 탐색한 연구(김준석, 2000; 강명숙, 2010), 교권침해 사례를 분석한 연구(신경희, 1995; 한정수, 2010; 조기성, 2019; 박근영, 2019), 교권인식에 관한 연구(장영란, 2003; 조수현, 2005; 심응섭, 2007; 김빛나라, 2012; 정은혜, 2020)등 비교적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수교사의 안전사고와 관련된 연구(강병일, 김남진, 2010; 김부기, 2003; 김소연, 김영일, 2007; 김우현, 2011; 김재철, 2010; 이소정, 2014)는 교권침해의 다른 유형에 비해 연구가 비교적 이루어졌으나 교권침해 실태를 조사한 연구(도경만, 2015; 이화영, 2016; 김민제, 2019)는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관련 연구에 의하면 특수교사는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1회 이상 교권상실을 경험(도경만, 2015)하였으나 교권침해를 경험한 특수교사의 대부분이 교권침해 처리 절차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이화영, 2016), 교권침해 시 적극적 대처가 어려운 이유로 학부모 및 학생과의 신뢰 훼손에 대한 걱정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김호연 외, 2016). 이는 특수교사의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에도 장애학생을 지도하는 특수한 상황에 놓인 특수교사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특수교사의 교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는 교권침해 유형과 그에 대한 실태 파악에서 그친 점과 교권침해의 다양한 주체와 원인에 관한 연구가 없는 점도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표 II-5>에 제시하였다.

<표 II-5>선행연구 분석표

주 제	연구주제 (제목)	연구자	연구대상	연구 방법	결론
교 권 침 해 개 념	현행법규의 교권에 관한 분석	김준석 (2000)	문헌	질적 연구	교권은 교사의 책임과 의무의 이행과 관련된 권리를 포함한 교사의 권위라고 규정했다
	교권보호 방안 및 교권 보호 현장 제정 연구	강명숙 (2010)	경기도 교원	조사 연구	교권은 학생교육을 위해 법이 인정한 권리로 개념을 규정하고, 교사의 권리는 교육할 권리, 전문직 종사자로서의 권리,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으로 나누었다.
교 권 침 해 사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탐색	신경희 (1995)	문헌, 판례	질적 연구	여러 가지 교권침해 사례를 사건과 판례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교원의 교권 신장은 법조문이나 제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교원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존중하려는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와

례	교권침해를 둘러싼 법적 쟁점 분석과 교권보호 방안	한정수 (2010)	문헌, 판례	질적 연구	공감대의 형성이 먼저 이루어졌을 때 교권이 확립될 수 있다고 하였다. 교권침해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교육주체별(학부모, 학생, 학교설립자)에 의한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권보호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조기성 (2019)	문헌	질적 연구	교권을 교육 법령에 의해 보장된 교사의 교육권 또는 인권 그리고 신분상 또는 직무상 특권 등이 침해되어 교사의 권위가 훼손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보았으며 법령에서 교권 개념을 어떻게 인식하고 도입했는지 관련 법령들을 비교 분석하고, 실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침이 되는 시·도교육청의 매뉴얼을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교권 인식에 관한 연구	교권 경시 현상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장영란 (2003)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교사	조사 연구	교권에 대한 인식과 교권 경시 현상의 원인에 대해 살펴보고, 교사의 입장에서 교권경시의 문제점과 교권 회복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연구	조수현 (2005)	서울특별시 초등학교 교사	조사 연구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이해, 교권 보장 실태 및 교권 확립의 저해 요인에 대한 인식, 교권 확립을 위한 교사의 요구에 대해 살펴본 결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이는 교권을 보장받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에 대한 홍보 부족 및 교사 스스로의 관심 부족으로 해석하였다.
	초등교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심응섭 (2007)	강원도 초등교원	조사 연구	초등교원들이 인권의식 함양을 통해서 교육문화를 개선하여 학생 및 학부모로부터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인권에 무관심한 사회 전반의 인권의식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인식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김빛나라 (2012)	경기·인천 고등학교 교사	조사 연구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교권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구축과 함께 교권침해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여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며,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함을 주

					장하였다
	중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및 교권 보호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인천광역시 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정은혜 (2020)	인천 중등학교 교사	조사 연구	교권침해 현황, 교권침해 발생 요인, 교권 보호방안에 대한 중등교사의 인식을 분석. 교사의 상호·존중의 문화에 기반하여 개방적, 유연한 학교 문화 조성이 필요하며,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시, 즉각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도록 법적 지원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특수 교사 안 전 사 고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의 학교 안전 사고 실태 조사 연구	강병일 김남진 (2010)	대구 특수교사	조사 연구	특수교육 현장의 현실에 맞는 법률의 수정 보완, 특수교육 현장의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다양한 분야간 교류의 필요성, 각 특수학교 유형별 학교안전사고 실태 파악,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파악의 필요성에 설명하였다.
	정서장애 특수학교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실태 및 인식	김부기 (2003)	전국 정서장애 특수학교 교원	조사 연구	정서장애 특수학교의 안전사고는 학생의 문제행동과 학급당 인원과다가 원인, 학교 안전사고 처리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특수 교원의 안전사고 발생시 학교안전공제회를 이용하여 해결한 경우가 미비. 학교안전공제회정관 및 보상 업무 규정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정신지체학교의 학교 안전사고 실태 사고 처리 및 예방에 관한 특수교사의 인식연구	김소연 김영일 (2007)	전국 정신지체학교 교원	조사 연구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유형 및 치료 기간에 관계없이 학생의 공격을 받았을 때 교사심리를 8항목으로 구분하고 항목별로 빈도를 측정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조사연구	김우현 (2011)	부산 공립 특수학교 교사	조사 연구	특수학교 교사가 겪는 상해 실태를 교사 변인별로 연구하고 사고처리 방법과 상해예방 인식에 대해 조사하였다.
	발달장애 학생의 폭력·공격성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대처방식	김재철 (2010)	대구 발달장애학교 특수교사	조사 연구	발달장애 학생의 폭력·공격성 행동에 대한 실태와 그에 따른 적절한 대처 방안, 인적 상해나 물적 손해에 대한 공적 보상 체제의 마련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발달장애 학생의 폭력·공격성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대처방식을 조사하였다.
	서울지역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양상과 영향 분석에 근거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방안 고찰	이소정 (2014)	서울시 지적장애 및 정서장애 특수학교 교원	조사 연구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양상 조사를 통하여, 특수학교 교사 상해 문제의 주요 특성을 제시하였다.

교 권 침 해 실 태 조 사	특수교사의 교권상 실 경험 유형과 실 태	도경만 (2015)	전국 특수교사	조사 연구	특수교사의 교권 유형별 교권 상실 경험에 대해 알아본 결과, 조사 대상 특수교사는 25개의 교권상실 유형 중 적어도 1가지 이상의 유형에서 1회 이상 교권상실을 경 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의 실태와 교권보호 지 원방안 고찰	이화영 (2016)	서울 고등학교 특 수학급 특수 교사	조사 연구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교권침해 경험 이 직업 생활, 신체 심리·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 처 회복 노력을 조사 하였다. 또한 특수학 급 교사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권침해 예방 및 지원요구를 제시 하였다.
	특수학교 교원의 교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장애학생의 공 격행동에 의한 교권침해 중심으로	김민제 (2019)	경기도 특수학교 교 사	조사 연구	고등학교 교사들이 생각하는 공격행동으 로 인한 교권침해의 실태, 현재 교권보호 정책의 문제점, 개선 방안에 대하여 제시 하였다.

3.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

1) 교권보호정책

선행연구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주체를 통한 여러 가지 유형의 교권침해
로 교권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고 그 내용도 매우 심각해지고 있어 현장교원의 사
기가 저하되고 있으며,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도 많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
인 교권침해 예방과 엄정한 대응을 통해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
생의 학습권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6년 교원지위법이 특별법으로 제정되었으나 선언적인 의미에 머물러 실효성이
없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국회에서는 2016년 시행령인 「교원예우에 관한 규
정」을 교사가 지나친 교권침해를 받게 되었을 때 교사의 대응 수단이 늘어 피해교
사의 대응이 용이해지도록 2019년 10월 17일 「교원지위법」을 개정 시행하였다.

변화된 내용은 다음 [그림 II-1]과 같다.

교원지위법 (약칭) 변천 과정

법 률	舊 「교원의 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2016. 2. 3. 법률 제139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舊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3936호, 2016. 2. 3. 공포, 8.4. 시행)	(현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법률 제16309호, 2019. 10. 17. 시행)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규정 부존재	-교육활동 중에 폭행이나 모욕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교원에 대하여 적절한 치유와 교권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고, 침해학생에게는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제명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함.	-침해에 대해 학교교권보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학, 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대응조치를 강화함.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특별휴가, 심리상담 및 조언 등 보호조치의 근거를 강화함.
대 통 령	舊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舊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7418호, 2016. 8. 2. 공포, 8.4.시행)	(현행)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제30119호, 2019. 10. 17. 시행)
	시·도 교육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시행 의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 설치·운영 등이 규정됨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구체적 유형 및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명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을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교원의 보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범위,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 대한 조치별 적용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출처 :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 자료.(광주광역시 교육청, 2019)

[그림 II-1] 교원지위법 변천과정

한국교육신문에 따르면 개정의 요지는 첫째로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원에 대한 법률상담, 심리상담 및 조언, 특별휴가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했다. 둘째로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효과적인 제재를 위해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게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전학·퇴학 등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게 했다. 셋째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해야 하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많은 교육청에서 전속 변호사를 고용하여 현장 교원들의 법률 자문을 돕고 있는 것에 더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제도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이 현장 교원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되어야 한다. 즉, 법률지원단은 민원이나 상담 의뢰에 대해서 단순한 답변을 제공하는 선이 아니라 실질적인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더불어 민원이나 상담사례들을 체계적으로 DB화하고 교원들의 유사사건 발생 시 선행 사례들을 유형별로 찾아보고, 법적인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 및 보호조치의 유형을 규정하고, 피해교원의 요청 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행위가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되면 관할청(공·사립학교는 교육감, 국립학교는 교육부 장관)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강제로 규정을 설정한 것은 이번 개정에서 가장 의미가 있다. 아울러 교원의 보호조치에 사용되는 비용은 교육활동을 침해 한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조치는 피해교원의 의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해당교원들이 회유 및 협박받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교원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교원침해가 발생한 경우 직권으로 고발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 조치별 적용 기준을 마련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심의를 침해 행위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으로 나누어 점수로 판단하여 조치를 결정한다. 이는 그 단계의 경계가 애매하여 학생과 교사간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본다.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에 학생과 함께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보호자가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 3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관할청이 부과, 징수한다’ 는 규정이 있다. 그

러나 지금까지 실제로 의무교육 위반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과태료 부과 시점과 학부모가 징수를 거부 시에 따른 조치’에 대한 분명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도 교원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권치유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광주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원들에게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20147년 장애학생의 중복·과잉행동으로 인한 학생 간 학교 폭력과 교원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 발생 시 전담할 수 있는 ‘특수교육 분쟁 솔루션 위원회’를 구성하여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조정,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특수교사 교권보호를 위한 체계적 해결책을 마련, 중도·중복장애학생 부적응 행동 중재 방법 등에 대해 자문과 조정하는 협의체를 만들었다(양창훈, 2020). 국립특수교육원은 특수학교 차원에서 장애학생의 도전적 행동에 의한 교사의 신체적 위협 등으로 교권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경우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되 학교 자체 내 문제해결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사안이 발생할 시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선도위원회를 소집하여 교육적·심리적 조치를 하고, 만일 교사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힌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소집하여 물적·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이다(전혜인, 명경미, 이찬우, 정평강,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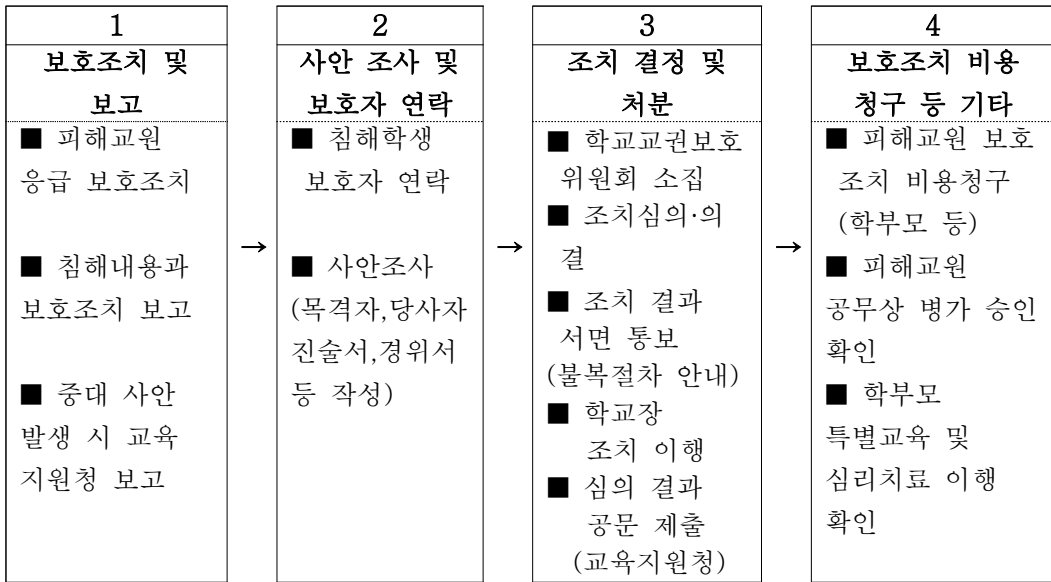
2) 광주광역시 교권보호정책

광주광역시 역시 ‘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2020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 응답하라 교권보호’를 마련하여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사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설치하였다.

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한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못한 분쟁을 조정하거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유치원의 교원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또 그 밖에 교육감이 교권보호를 위해 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를 개최한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는 [그림 II-2]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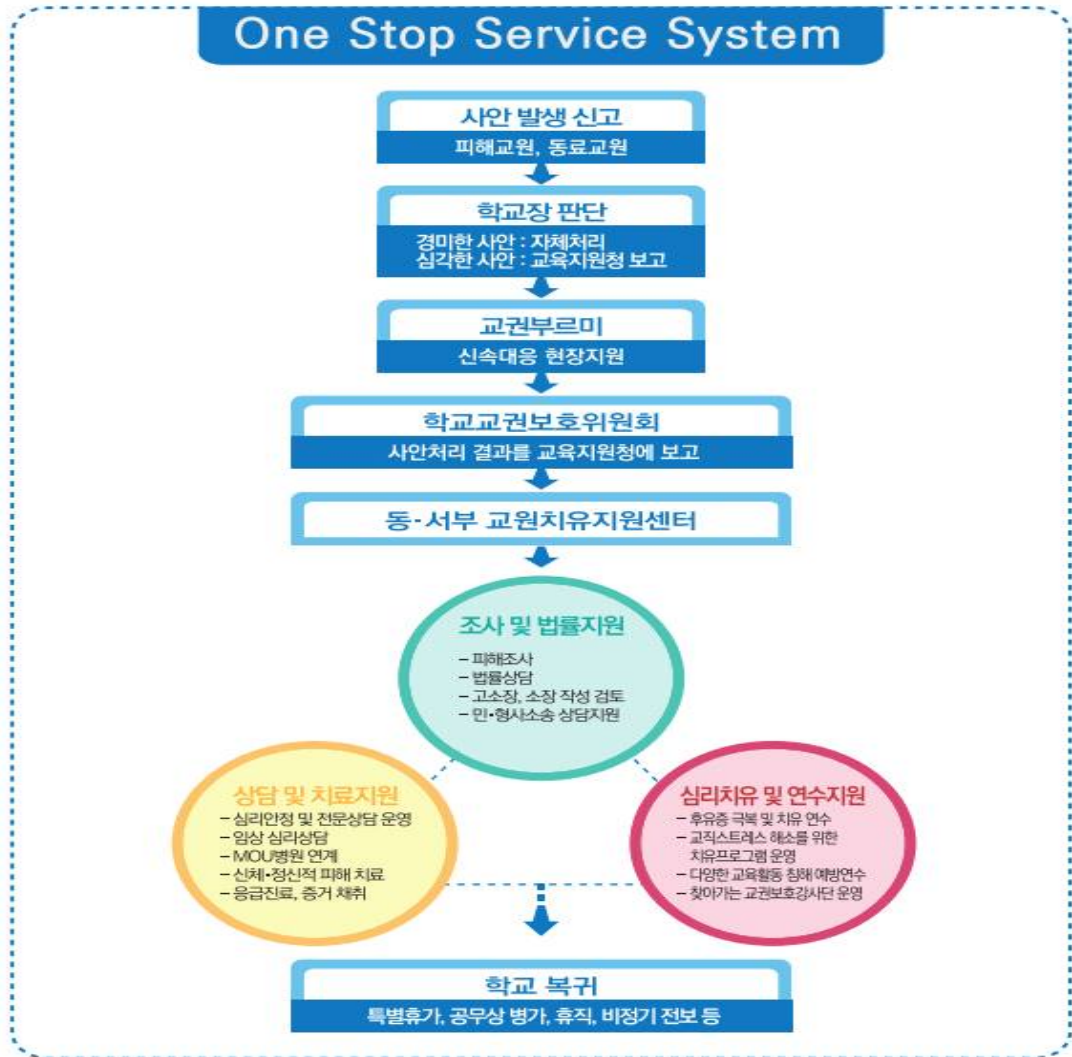


출처 : 2020응답하라 교권보호(광주광역시교육청, 2020). p.45

[그림 II-2] 교육활동 침해 사안 일반 절차

교육활동 침해사안이 발생할 시 중대 사안일 경우 즉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 또는 내부메일이나 공문을 통해 즉시 보고한다. 학교교권보호 위원회를 통해 사안을 처리한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 민주시민교육지원과 교권보호 팀에 전자문서를 통해 보고하고 한다. 이외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률 및 심리 상담을 이용한다. 둘째, 교원치유지원센터 운영 및 단위학교에서의 교육침해 예방 활동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관내 국·공·사립(유치원)학교의 휴직자를 제외한 교원(기간제 포함) 및 교육전문직원을 대상으로 교원보호배상책임 보험을 도입하여 교육활동 보호

를 지원한다. 셋째, 교육활동 침해 시 신속대응 할 수 있는 현장지원팀인 교권 부르미를 운영한다. 교권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전문상담사로 구성되며 교원(학교)의 요청 시 One Step Service System을 강화하여 즉각 현장방문 지원한다. 이때 피해교원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응한다. One Stop Service System은 [그림 II-3]과 같은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출처 : 2020응답하라 교권보호(광주광역시교육청, 2020). p.68

[그림 II-3] One Stop Service System

3) 특수교사의 지원요구

교권침해 실태에 관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이 시대와 상황에 맞는 제도나 장치는 꾸준히 마련되고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교권침해 사례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그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이다. 특수교사의 경우 일반교사와 다른 특수한 교육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교권침해 상황에서 특수교사들이 필요로 하는 지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교권침해 처리 절차 및 교권보호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수교사가 교권침해 처리 과정에서 무대응의 이유로 ‘대응하기 위한 정보가 부족’이라고 응답한 결과의 이유가 홍보의 부족이라 판단하고, 시·도 교육청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교사가 교권침해 처리 및 예방에 대한 정보에 접근하도록 해야 한다(이화영, 2016).

둘째, 법률 및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특수교사가 요구하는 교권침해에 대한 가장 필요한 요건임을 선행연구(강명숙 외, 2010; 이화영, 2016)를 통해 알 수 있다. 2019 개정 시행하는 교원지위법은 기존 법률에 비하여 교육활동 침해교사를 위한 지원이 강화되어 있으므로 추후 이에 따른 결과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셋째, 교권보호 연수는 예방적 차원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필요하다. 교사나 학생의 경우 학교에서 법률이 지정한 의무연수를 수행하고 있지만 학부모의 경우 연수 시행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문제가 발생 후 처벌적 차원의 연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일부 특수교사의 경우 학부모와 긍정적 관계 형성을 위해 SNS를 통한 학교생활에 대한 잦은 안내를 활용하는 것처럼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도 자료와 시스템의 개발을 통해 시행될 수 있도록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넷째, 교권침해를 위한 심리·상담치료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인 역량강화 프로그램(정연홍, 유형근, 2015)을 제공하여 교권침해 극복을 위한 교사의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켜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에서의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상황과 문화에 적합하도록 기준을 마련하여 교육활동 침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는 특수교사 교권침해 처리과정의 지원요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교권침해 과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처리를 특수교사들이 가장 효율적인 처리방안이라고 응답하였다(이화영, 2016).

새로운 법이 개정 발표되고 시행됨에 따라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사들 또한 교육현장이 예전과 달리 많은 점이 달라지길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광주광역시 내 특수학급 교사들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실태와 특수학급 교사들의 지원요구사항을 알아보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교권침해에 대한 광주광역시 소속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교권침해 실태와 원인을 알아보고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을 알아보기 위한 조사연구이다.

2. 연구 참여자

특수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중등학교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관한 실태와 원인 및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요구를 조사하기 위해 연구 목적에 맞는 표본을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하였다. 2020학년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20c)에 제시된 내용에 따르면 1학급 이상 설치된 광주광역시교육청 소속 중학교는 56개교, 고등학교는 24개교이다. 연구 참여자는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소속된 80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총 127명이다. 127명의 특수학급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부하였으며, 이 조사대상자 127명 중 광주광역시 중학교 54부(60%), 고등학교 36부(40%)가 회수되어 회수된 총수는 93부였으며 회수율은 73%이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무응답 등 무성의한 응답으로 판단되는 설문지 3부는 자료처리 및 분석에 사용하지 않고, 총 90부의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 참여자의 배경정보는 <표 III-1>과 같다. 성별은 남자 20명(22.5%), 여자 70명(77.8%), 연령대로는 30대 43.3%, 40대 33.3%, 50대 이상 15.6%, 20대 7.8%의 순이었다. 교육경력은 5년 미만이라는 응답자가 35명(38.9%), 5~10년 미만 29명(32.2%), 15년 이상 14명(15.6%), 10~15년 미만 12명(13.3%)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교직경력은 15년 이상이 27명(30.0%), 5년 미만이 25명(27.8%), 5~10년 미만 24명

(26.7%), 10~15년 미만 14명(15.6%)의 순으로 분포되었다. 직급은 71명(78.9%)이 교사로 응답해 대부분이 일반교사였다. 다음으로 기간제교사가 17명(18.9%), 부장교사가 2명(2.2%) 이었다. 근무 학교급은 중학교 54명(40.0%), 고등학교 36명(40.0%)이었으며, 일반학교 내 특수 학급수는 1학급이 42명(46.7%), 2학급이 32명(35.6%), 3학급 이상이 16명(17.8%)로 나타났다. 학급의 학생수는 4명이상~8명 미만이 39명(43.3%). 4명 미만이 26명(28.9%), 8명 이상이 25명(27.8%)로 집계되었다.

<표 III-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인 특성

변인	구분	특수학급 교사	
		N	%
성별	남	20	22.2
	여	70	77.8
	계	90	100.0
연령	20대	7	7.8
	30대	39	43.3
	40대	30	33.3
	50대 이상	14	15.6
	계	90	100.0
특수학급 교육경력	5년 미만	35	38.9
	5~10년 미만	29	32.2
	10~15년 미만	12	13.3
	15년 이상	14	15.6
계	90	100.0	
총 교직 경력	5년 미만	25	27.7
	5~10년 미만	24	26.7
	10~15년 미만	14	15.6
	15년 이상	27	30.0
계	90	100.0	
직급	교사	71	78.9
	부장교사	2	2.2
	기간제교사	17	18.9
계	90	100.0	
학교급	중학교	54	60.0
	고등학교	36	40.0
	계	90	100.0
일반학교내 특수학급수	1학급	42	46.6
	2학급	32	35.6
	3학급이상	16	17.8
	계	90	100.0
학생수	4명미만	26	28.9
	4~8명미만	39	43.3
	8명이상	25	27.8
	계	90	100.0

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교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 등을 참고하여 연구 목적에 맞게 수정·보완하였다. 설문지 개발을 위한 절차와 측정항목들에 대한 신뢰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설문지 개발

본 연구는 3단계 절차로 개발되었다.

1단계 선행연구에 근거로 하여 1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특수교사 교권침해에 관련한 논문, 보고서, 통계자료를 고찰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한 요소를 선택한 후 1차 연구도구 문항을 구성하였다. 2단계는 문항요소와 전체적인 문항수를 결정하는 내용타당도 검증에 근거한 2차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3단계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설문지의 내용타당도를 점검한 후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1) 1차 예비문항 구성 : 문헌 및 선행연구

본 연구에서 광주광역시 중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에 관한 실태 및 원인과 교권보호를 위한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권침해에 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설문지 내용을 구성하였다. 먼저 특수교사 교권침해 실태에 관한 영역 설문지는 이화영(2015), 김민제(2019)의 설문지 내용과 요소를 참고하였다. 둘째, 특수교사 교권침해의 원인은 도경만(2015), 오주석(2018)을 참고하였다. 셋째, 교권보호 정책 실태에 따른 요구사항은 도경만(2015), 김민제(2019), 조기성(2019)을 참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특수교육 전공 지도교수의 점검 하에 1차 완성하였다.

(2) 2차 예비문항 구성 : 내용 타당도 검증

1차 작성한 설문지에 대한 석사학위를 소지한 중학교 특수교사 3명과 고등학교 교사 1명에게 내용타당도를 검증받아 다음과 같이 수정 보완하였다. 특수교사의 특성상 교권침해 주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면 본인이 받은 교권침해 자체를 인식 또는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설문지 서두에 교권침해 주체에 관한 설명을 보완하였다. 인적사항 중 교사의 직급을 묻는 문항에서 기간제 교사를 따로 구분하는 것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의견에 삭제를 고려하였으나 본 설문 대상에 기간제 교사들 또한 포함되어야 하고 신분상 침해 받는 경우 또한 교권침해에 해당하므로 직급에 기간제 교사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교육경력을 묻는 문항에 대해서도 특수교사 중 일반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총 교육경력을 묻는 문항을 따로 구분하기로 하였다. 1차 예비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2차 예비 문항을 완성하였다. 세부적인 내용은 <표 III-2>와 같다.

<표 III-2> 내용타당도 검증 후 예비문항 수정 및 보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수정	교육경력	15년 미만, 2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보완	교권침해 주체에 관한 설명	없음	교권침해의 주체가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명시
	인적사항	없음	특수학급 교육경력

(3) 예비조사 및 최종 설문지 완성

2차 내용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보완한 예비문항에 대한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1인과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 1인에게 예비조사를 시행하였다. 주제부합도, 문장의 적합성, 내용중복 등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적으로 연구도구를 완성하였다. 이 연구의 설문도구는 특수교사 교권침해 실태를 묻는 영역은 총 7문항, 교권침해 원인을 묻는 영역은 총 5문항, 교권보호 방안 및 교사의 지원요구를

묻는 영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설문 항목들은 <표 III-3>과 같고
 설문지는 <부록>에 제시하였다.

<표 III-3> 설문지 구성 내용

영역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특수학급 교사 교권침해 실태	교권침해 주체	1	12
	교권침해 수준(심각성 정도)	2	
	교권침해 경험의 유무 및 횟수	3	
	교권침해 유형	4	
	교권침해 처리 기관 인지 여부	5	
	교권침해 발생 시간	6	
	발생 장소	7	
	교권침해 발생 원인	8	
	학생들의 교권침해 형태	9	
	학부모로 인한 교권침해 이유	10	
	학생들로 인한 교권침해 이유	11	
	학교관리자로 인한 교권침해 이유	12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들의 인식 및 지원방안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 여부	13	11
	교권침해 관련 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반영 정도	14	
	교권침해 발생 시 주도적으로 처리할 사람	15	
	교권침해 대처방법	16	
	교권침해 발생 후 가장 필요한 지원부분	17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나 해결 어려운 이유	18	
	교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지원체계	19	
	교권침해를 경험한 선생님을 위한 지원 제공 주체	20	
	교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사 노력 사항	21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가 주체적으로 노력 사항	22	
	교권보호를 위한 교사 의견	23	
합계			23

4.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관련 문헌 조사를 통해 1차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그 후 특수교육전문가와 광주광역시 중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내용타당도 검사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검사는 2020년 7월 21일부터 2020년 8월 22일까지 직접방문 또는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여 실시하였고 회수된 90부 설문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5. 자료 처리

본 연구는 SPSS 2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연구 변수들에 대한 다중응답분석, 기술통계, t-test를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급 교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교권침해 실태, 교권보호정책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에 대하여는 평균, 표준편차, 빈도 등 기술 통계를 사용하였다.

둘째,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정도와 교권침해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반영 정도에 대한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증과 집단 간 평균 차이 검증을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셋째, 특수교사의 교권침해 실태와 원인,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다중응답에 대해서는 반응백분율과 케이스 백분율을 산출하였고, 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통한 빈도와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교권침해 실태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교권침해 실태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교권침해 주체

교권침해 주체에 관한 조사 결과는 학부모가 교권침해 주체라는 응답이 56명(62.2%)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학생이라는 응답이 22명(22.0%), 교사가 12명(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 IV-1>에 제시하였다.

<표 IV-1> 교권침해 주체

항목		빈도(N)	%
특수교사 교권침해 주체	학생	22	24.4
	학부모	56	62.2
	교사	12	13.3
	전체	90	100.0

2) 교권침해 수준 및 경험

특수학급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수준에 대한 특수교사의 응답을 <표 IV-2>를 통해 살펴보면, '보통이다' 와 '심각하다' 가 각각 37명(41.1%)로 나타났다. '심각하지 않

다'와 '매우 심각하다' 도 각각 8명(8.9%)으로 응답하여 조사대상자의 경우 심각하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한편 특수학급 현장에서의 교권침해 경험 여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에서 1~3회가 47명(52.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10회 이상이 15명(16.7%)이었으며 '없다' 는 응답은 13명(14.%)의 순이었다. 다음으로 4~6회가 9명(10.0%), 7~9회 6명(6.7%)이었다.

<표 IV-2> 교권침해 수준 및 교권침해 경험의 횟수

항목		빈도(N)	%
특수학급 현장 교권침해 수준	전혀 심각하지 않다	0	0
	심각하지 않다	8	8.9
	보통이다	37	41.1
	심각하다	37	41.1
	매우 심각하다	8	8.9
	전체	90	100
특수학급 현장 교권침해 경험 횟수	1~3회	47	52.2
	4~6회	9	10.0
	7~9회	6	6.7
	10회 이상	15	16.7
	없다	13	14.4
	전체	90	100

3) 교권침해 유형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권침해 유형에 대한 조사 결과는 생/학부모 부당

행위가 69명(7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안전사고/직원 갈등이 14명(15.6%), 다음으로 명예훼손이 7명(7.8%)의 순으로 나타나 학생과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가장 많은 교권침해 유형으로 응답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IV-3>과 같다.

<표 IV-3> 교권침해 유형

	항목	빈도(N)	%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권침해 유형	신분피해(부당한 징계)	0	0.0
	학교안전사고 / 직원갈등	14	15.6
	부당행위(학생, 학부모)	69	76.7
	명예훼손	7	7.8
	전체	90	100.0

4) 교권침해 처리 상담 기관 및 단체 인지여부

교권침해 처리 상담기관 및 단체 인지여부에 대한 특수교사의 응답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51명(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주광역시 교권치유지원센터가 50명(27.8%)로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전교조 교권 상담마당이 40명(22.2%)이었으며, 한교총 교권교직상담이 16명(8.9%), 한국 특수교육 총연합회가 12명(6.7%), '모른다' 가 11명(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교권침해 처리 지원기관 및 단체에 대한 인지 여부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광주광역시 교권치유 지원센터, 전교조 교권상담마당, 한교총 교권교직상담, 한국특수교육 총연합회의 순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른다' 는 응답도 11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교권침해 처리 상담기관 및 단체 인지여부 다중응답

항목	빈도(N)	반응%	케이스%	
광주광역시 교권치유 지원센터	50	27.8	56.2	
학교 교권보호 위원회	51	28.3	57.3	
한교총 교권 교직 상담	16	8.9	18.0	
교권침해처리 상담기관 및 단체 인지여부	전교조 교권상담마당	40	22.2	44.9
	한국특수교육 총연합회	12	6.7	13.5
	모른다	11	6.1	12.4
	전체	180	100.0	202.2

5)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에 관한 특수교사의 응답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

항목	빈도(N)	%
학생 지도시	36	25.2
학부모 면담	45	31.5
수업시간 중	26	18.2
쉬는 시간	8	5.6
퇴근 이후	28	19.6
기타	0	0
전체	90	100

학부모면담이 45명(3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생지도시가 36명

(25.2%), 퇴근 이후가 28명(19.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수업시간 중이 26명(18.2%), 쉬는 시간이 8명(5.6%)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권침해는 학부모 면담과 학생지도 시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6)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에 대한 특수교사의 응답에서 교실이 61명(53.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학교 밖이 15명(13.2%), SNS가 13명(11.4%), 교무실이 12명(10.5%), 교장실이 10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상담실이 2명(1.8%), 운동장이 1명(0.9%)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교실로 나타났으며 교권침해 당사자 응답에서 학부모와 학생이라는 응답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표 IV-6>에 제시하였다.

<표 IV-6>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 다중응답

	항목	빈도(N)	반응%	케이스%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장소	교실	61	53.5	68.5
	교무실	12	10.5	13.5
	상담실	2	1.8	2.2
	교장실	10	8.8	11.2
	운동장	1	0.9	1.1
	학교 밖	15	13.2	16.9
	SNS	13	11.4	14.6
	전체	90	100	128.1

7) 교권침해 발생 주된 원인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의 조사 결과는 교권 경시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4명(3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현장을 무시한 교육정책이 28명(31.1%), 기타가 16명(17.8%), 가정교육의 약화가 12명(13.8%)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과 같은 결과를 <표 IV-7>에 제시하였다.

<표 IV-7>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항목		빈도(N)	%
	학교현장을 무시한 교육정책	28	31.1
특수교사로서 교권침해가 발생하는 주된 원인	교권경시 사회적 분위기	34	37.8
	가정교육의 약화	12	13.3
	기타	16	17.8
전체		90	100.0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학생수 8명 이상과 미만 집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 <표 IV-8>과 같다.

<표 IV-8> 특수학급 학생수에 따른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원인

구 분	학생수			χ^2	p
	8명미만	8명이상	계		
학교 현장 무시 교육정책	22	6	28	10.351	.013
	24.4%	6.8%	31.2%		
교권경시 사회분위기	29	5	34		
	32.2%	5.6%	37.8%		
기타(가정교육의 약화)	14	14	28		
	15.5%	15.5%	31%		
계	65	25	90		
	72.1%	27.9%	100.0%		

* $p < .05$

학생수에 따른 교권침해 원인에서 8명 미만의 경우, 교권경시 사회분위기가 29명(3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학교현장무시 교육정책이 22명(24.4%)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8명 이상의 경우, 기타(가정교육의 약화)가 14명(15.6%)으로 가장 높았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p < .05$)하였으며, 8명 미만의 학생 수에서는 교권경시 사회분위기와 학교현장을 무시한 교육정책이 높은 응답을 보였고 8명 이상의 학생수에서는 기타(가정교육의 약화)를 교권침해 원인으로 선택하는 차이를 보였다.

8) 특수학급에서 학생의 교권침해 형태

특수학급에서 학생의 교권침해 형태에 대한 특수교사의 응답 결과는 폭언 욕설이 26명(29.5%)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폭행이 23명(26.1%), 교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 20명(22.7%), 수업진행 방해가 19명(21.6%)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교권침해 형태는 주로 폭언욕설, 폭행, 교사의 정당지시 불이행, 수업진행 방해의 순서로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결과를 보였다. 이를 <표 IV-9>에 제시하였다.

<표 IV-9> 특수학급에서 학생의 교권침해 형태

항목	빈도(N)	%
폭행	23	25.1
폭언욕설	26	29.5
수업진행 방해	19	21.7
교사의 정당지시 불이행	20	22.7
전체	88	100.0

9)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에 관한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표 IV-10>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다중응답

	항목	빈도(N)	반응 %	케이스 %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학급운영 불만	16	12.3	18.2
	학생교과지도 불만	9	6.9	10.2
	학생 생활지도 불만	29	22.4	33.0
	교사불신	35	26.9	39.8
	학생지도 등 교육권요구	41	31.5	46.6
	전체	130	100.0	147.7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사 중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에 대해 학생지도 등 교육권에 대한 요구가 41명(31.5%)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사에 대한 불신이 35명(26.9%), 학생 생활지도 불만이 29명(22.3%), 학급운영불만이 16명(12.3%), 학생교과지도 불만이 9명(6.9%)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로 학생지도 등 교육권 요구와 교사불신, 학생생활지도 불만이 높은 이유로 응답되었으며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10) 특수학급에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특수학급에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에 대한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표 IV-11> 특수학급에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항목	빈도(N)	%
특수학급에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교사불신 교과·생활지도 불만	45	50.0
	학생권리주장	20	22.2
	가정교육약화	25	27.8
	전체	90	100.0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사 중 특수학급에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에 대해 교사불신 교과·생활지도 불만이 45명(50.0%)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가정교육의 약화가 25명(27.8%)이었으며, 다음으로 학생권리주장이 20명(2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은 교사불신과 교과생활지도 불만 등 주로 교사와 관련된 사항이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교사 성별에 따른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성별에 따른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의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남자의 경우, 교사불신 교과생활지도 불만이 16명(17.8%)도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다음으로 학생권리주장과 가정교육약화가 각각 2명(2.2%)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 교사불신 교과생활지도 불만이 29명(32.2%)도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가정교육의 약화가 23명(25.6%), 학생권리주장이 18명(20.0%)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남자와 여자 모두 교사불신 교과생활지도 불만 등 교사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았고, 여자의 경우 가정교육의 약화도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표 IV-12>에 제시하였다.

<표 IV-12> 교사성별에 따른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구 분	교사 성별			x^2	p
	남	여	계		
교사불신 교과·생활지도	16	29	45	9.283	.010
불만	17.8%	32.2%	50.0%		
학생권리주장	2	18	20		
	2.2%	20.0%	22.2%		
가정교육약화	2	23	25		
	2.2%	25.6%	27.8%		
계	20	70	90		
	22.2%	77.8%	100.0%		

* $p < .05$

11)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에 대한 결과는 학교관리자 권위적 교직문화가 53.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교사 본연 업무 외 지시 부당지시가 22.2%로 나타났다. <표 IV-13> 결과에서 보듯이, 학교관리자 교권침해 주된 이유는 권위적 교직문화와 교원단체 갈등으로부터 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교사본연업무 외 지시, 학급운영과 수업부당 요구 등 교육권침해와 부당 지시 등도 그 이유로 나타났다.

<표 IV-13> 학교관리자에 의한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이유

항목	빈도(N)	%	
학교관리자 교권침해 주된 이유	권위적 교직문화	48	53.3
	교원단체와 갈등	4	4.4
	학급운영 및 교과수업의 부당한 요구	18	20
	교사 본연 업무 외 지시	20	22.3
	전체	90	100.0

2.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 및 지원방안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교사의 교권보호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대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지여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지 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알고 있다는 응답이 31명(34.4%)이었고, 모른다는 응답이 59명(65.6%)으로 더 높게 나타나 65.6%가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나 교권보호에 대한 교육청의 시행내용을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14>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지 여부

항목		빈도(N)	%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 여부	알고 있다	31	34.4
	모른다	59	65.6
전체		90	100.0

인구사회학적 변수 특성에 따른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사의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특수교사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 여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1$). 남자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18명(20.0%)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의 경우는 잘 모른다가 41명(45.6%)으로 알고 있다는 29명(32.2%)보다 훨씬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남녀 모두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IV-15>와 같다.

<표 IV-15> 특수교사 성별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구 분	성별			x^2	p
	남	여	계		
알고 있다	2 2.2%	29 32.2%	31 34.4%	6.805	.009
잘 모른다	18 20.0%	41 45.6%	59 65.6%		
계	20 22.2%	70 77.8%	90 100.0%		

** $p < .01$

(2) 특수교사의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 여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01$). 이에 대한 결과는 다음 <표 IV-16>과 같다.

<표 IV-16> 특수교사 연령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여부

구 분	연령 30대 전후			x^2	p
	30대 이하	30대 이상	계		
알고 있다	8 8.9%	23 25.6%	31 34.4%	12.118	.000
잘 모른다	38 42.2%	21 23.3%	59 65.6%		
계	46 51.1%	44 48.9%	90 100.0%		

*** $p < .001$

30대 이하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38명(42.2%)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이상의 경우는 ‘잘 모른다’가 21명(23.3%)이었으며, ‘알고 있다’는 23명(25.6%)으로 약간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30대 이하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30대 이상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3) 특수교사의 교육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도 여부

교육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도 여부에 대한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교육경력 10년 미만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47명(52.2%)으로 ‘알고 있다’ 17명(18.9%)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경우는 ‘잘 모른다’가 12명(13.3%)이었으며, ‘알고 있다’는 14명(15.6%)으로 약간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10년미만의 경우 ‘잘모른다’는 응답이 훨씬 높았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런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 IV-17>에 제시하였다.

<표 IV-17> 교육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지도 여부

구 분	교육경력			χ^2	p
	10년미만	10년이상	계		
알고 있다	17 18.9%	14 15.6%	31 34.4%	6.095	.014
잘 모른다	47 52.2%	12 13.3%	59 65.6%		
계	64 71.1%	26 28.9%	90 100.0%		

** $p < .05$

(4) 특수교사의 총 교직 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여부

총교직 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 인지여부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총교육경력 10년 미만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41명(45.6%)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의 경우는 ‘잘 모른다’가 18명(20.0%)이었으며, ‘알고 있다’는 23명(25.6%)으로 알고 있다는 응답이 약간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10년미만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1$). 이와 같은 결과를 <표 IV-18>에 제시하였다.

<표 IV-18> 특수교사의 총교직 경력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여부

구 분	총교직 경력			χ^2	p
	10년미만	10년이상	계		
알고 있다	8 8.9%	23 25.6%	31 34.4%	15.637	.000
잘 모른다	41 45.6%	18 20.0%	59 65.6%		
계	49 54.4%	41 45.6%	90 100.0%		

*** $p < .001$

2)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응답내용을 살펴보면,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와 ‘보통이다’가 각각 26명(28.9%)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가 12명(14.4%), ‘약간 반영한다’가 10명(11.1%), ‘잘 모른다’가 9명(10.0%), ‘매우 반영한다’가 6명(6.7%)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특수교사 의견 반영에 대한 생각은 ‘반영하지 않는다’가 38명(43.3%)으로 매우 높았으며, ‘반영한다’는 의견 16명(17.8%)보다 훨씬 높아 특수교사 의견반영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특성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 IV-19>에 제시하였다.

<표 IV-19>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항목	빈도(N)	%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	12	14.4
별로 반영하지 않는다	26	28.9
보통이다	26	28.9
약간 반영한다	10	11.1
매우 반영한다	6	6.7
잘 모른다	9	10.0
전체	90	100.0

인구사회학적 변수 특성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생각의 차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생각에 대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교육경력 10년미만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34명(42.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 15명(18.5%), ‘반영한다’가 9명(11.1%)의 순이었다.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보

통이다'가 11명(13.6%)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반영한다'가 7명(8.6%), '반영하지 않는다'가 5명(6.2%)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교육경력 10년미만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은 응답 특성을 보였으며, 10년이상의 경우는 '보통이다'라는 생각이 가장 많았고 '반영한다.'가 '반영하지 않는다'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 IV-20>에 제시하였다.

<표 IV-20>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구 분	교육경력			x^2	p
	10년미만	10년이상	계		
반영하지 않는다	34 42.0%	5 6.2%	39 48.1%	8.983	.013
보통이다	15 18.5%	11 13.6%	26 32.1%		
반영한다	9 11.1%	7 8.6%	16 19.8%		
계	58 71.6%	23 28.4%	90 100.0%		

* $p < .05$

(2) 총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총 교직경력에 따른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10년 미만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다'가 28명(34.6%)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보통이다'가 12명(14.8%), '반영한다'가 6명(7.4%)의 순이었다. 10년 이상의 경우 '보통이다'가 14명(17.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반영하지 않는다'가 11명(13.6%), '반영한다'가 10명(12.3%)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총교직경력 10년미만의 경우 '반영하지 않는다'가 매우 높게 나타났고, 10년 이상의 경우에는 '보통

이다'가 제일 높았고 '반영하지 않는다'가 '반영한다'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나 10년미만의 경우가 더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표 IV-21>에 제시하였다.

<표 IV-21> 총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구 분	총 교직경력			χ^2	p
	10년미만	10년이상	계		
반영하지 않는다	28 34.6%	11 13.6%	39 48.1%	7.203	.014
보통이다	12 14.8%	14 17.3%	26 32.1%		
반영한다	6 7.4%	10 12.3%	16 19.8%		
계	46 56.8%	35 43.2%	90 100.0%		

* $p < .05$

(3)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평균차이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생각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의 결과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교육경력 10년 이상 집단이 평균 3.50이었으며 10년미만 집단이 2.75의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10년미만 집단이 정책 반영정도에 더 부정적이었으며 교육경력 10년이상의 집단에서 반영정도가 더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다음과 같은 결과는 <표 IV-22>에 제시하였다.

<표 IV-22>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평균차이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10년이상	26	3.50	88	-2.239*
	10년미만	64	2.75		

* $p < .05$

(4) 총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평균차이

총교직 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생각에 대한 집단 간 차이분석의 결과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p < .05$). 총 교직경력 10년이상 집단이 평균 3.39이었으며 10년미만 집단이 2.61의 평균을 보였다. 따라서 총교직경력 10년미만 집단이 정책 반영정도에 더 부정적이었으며 총교직 경력 10년 이상의 집단에서 반영정도가 더 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이와 같은 결과를 다음 <표 IV-23>에 제시하였다.

<표 IV-23> 총 교직 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구 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유도	t 값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	10년이상	41	3.39	88	-2.574*
	10년미만	49	2.61		

* $p < .05$

3) 교권침해 발생 시 해결 주체

특수교사 중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해결 책임자에 대한 설문응답에서 동료교원이 33명(3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피해당사자가 25명(27.8%), 학교관리자/교권보호위원회가 19명(21.1%), 교육청 13명(14.4%)의 순이었다. 따라서 응답자는 교권침해에 대한 적극적 해결책임자로서 동료교원, 피해당사자, 학교관리자/교권보호위원회, 교육청의 순으로 응답하는 특징을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IV-24>와 같다.

<표 IV-24>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해결 책임자

항목	빈도(N)	%	
교권침해 발생 시 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피해당사자	25	27.8
	동료교원	33	36.7
	학교관리자/교권보호위원회	19	21.1
	교육청	13	14.4
	전체	90	100.0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해결 책임자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결과에서는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의 응답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정교사의 경우, 동료교원이 31명(34.4%)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피해당사자가 19명(12.1%)이었고, 이어서 교육청이 12명(13.3%), 학교관리자/교권보호위원회가 11명(12.2%)의 순이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관리자/교권보호위원회가 8명(8.9%)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피해당사자가 6명(6.7%)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정교사의 경우는 동료교원, 피해당사자, 교육청, 학교관리자/보호

위원회의 순으로 교권침해 시 적극적 해결자가 되어야 한다는 응답 특성을 보였으며, 기간제교사의 경우는 학교관리자/교권보호위원회, 피해당사자의 순으로 응답하는 특성을 보였다. 결과를 <표 IV-25>에 제시하였다.

<표 IV-25>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해결 책임자

구 분	직 급			x^2	p
	정교사	기간제교사	계		
피해당사자	19	6	25	12.782	.047
	21.1%	6.7%	27.8%		
동료교원	31	2	33		
	34.4%	2.2%	36.7%		
학교관리자/교권 보호위원회	11	8	19		
	12.2%	8.9%	21.1%		
교육청	12	1	13		
	13.3%	1.1%	14.4%		
계	73	17	90		
	81.1%	18.9%	100.0%		

** $p < .05$

4)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응답 결과는 직접해결/법/당사자/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등 자신이 직접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명(55.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이어서 관리자보고 후 지시 따름이 23명(25.6%),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이 17명(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표 IV-26>과 같다.

<표 IV-26>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항목	빈도(N)	%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	17	18.9
	직접해결/법/당사자/ 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50	55.6
	관리자 보고 후 지시따름	23	25.6
	전체	90	100.0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결과에서 경력 10년 미만과 10년 이상으로 나눈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p < .01$). 자세한 결과는 <표 IV-27>과 같다.

<표 IV-27>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구 분	교육경력			x^2	p
	10년미만	10년이상	계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	17 26.6%	0 0.0%	17 18.9%	9.525	.009
직접해결/법/당사자/ 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34 37.8%	16 17.8%	50 55.6%		
관리자 보고 후 지시따름	13 14.4%	10 11.1%	23 25.6%		
계	64 71.1%	26 28.9%	90 100.0%		

** $p < .01$

특수학급 교육경력 10년미만의 경우, 직접해결/법/당사자/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등 직접해결한다는 응답이 34명(37.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이 17명(26.6%), 관리자보고 후 지시 따름이 13명(14.4%)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이상의 경우, 직접해결/법/당사자/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등 직접해결한다는 응답이 16명(17.8%)으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관리자보고 후 지시 따름이 10명(11.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에서 10년미만과 10년이상의 경우 모두 여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접 해결한다고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2) 총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 방법

총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에 대한 결과에서도 10년 미만의 경우와 10년 이상의 경우 비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p < .01$). 자세한 결과는 다음 <표 IV-28>과 같다.

<표 IV-28> 특수학급 총 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구 분	총 교직경력			x^2	p
	10년미만	10년이상	계		
목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	15 16.7%	2 2.2%	17 18.9%	9.525	.008
직접해결/법/당사자/ 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24 26.7%	26 28.9%	50 55.6%		
관리자 보고 후 지시따름	10 11.1%	13 14.4%	23 25.6%		
계	49 54.4%	41 45.6%	90 100.0%		

** $p < .01$

<표 IV-2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특수학급 총교직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에서 10년미만의 경우, 직접해결/법/당사자/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등 직접 해결한다는 응답이 24명(26.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목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이 15명(16.7%), 관리자 보고 후 지시따름이 10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10년이상의 경우, 직접해결/법/당사자/교원단체자문/경찰신고 등 직접해결한다는 응답이 26명(28.9%)으로 가장 높게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관리자 보고 후 지시 따름이 13명(14.4%)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상에서 볼 때,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에서 10년미만과 10년이상 의 경우 모두 여러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직접해결한다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응답에서는 10년미만의 경우는 목인 또는 조치하지 않음이 선택되었

고, 10년 이상의 경우 관리자 보고 후 지시 따름이 응답되었다.

5) 교권침해 발생 시 사후 대응 및 지원대책

교권침해 발생 시 사후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IV-29>과 같다.

<표 IV-29> 교권침해 발생 시 사후대응 및 지원대책 다중응답

항목		빈도(N)	반응%	케이스%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법률상담	27	16.2	31.0
	특별휴가	24	14.4	27.6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제도 도입	42	25.1	48.3
	변호사 무료상담	19	11.4	21.8
	교육청지원	20	12.0	23.0
	치유심리상담 제공 및 치료	35	21.0	40.2
전체		170	100.0	192.0

이상의 <표 IV-2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사 중 교권침해 발생 시 사후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다중응답에서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제도 도입이 42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치유심리상담 제공 및 치료가 35명(21.0%)이었으며 이어서 법률상담이 27명(16.2%), 특별휴가가 24명(14.4%), 교육청 지원이 20명(12.0%), 변호사 무료상담이 19명(11.4%)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교권침해 발생 시 사후대응 및 지원대책에서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제도 도입을 가장 많이 응답하여 배상과 중재가 필요함을 나타내 주었고, 다음으로 심리상담 제공과 법률상담도 상당부분 필요한 것으로 응답되었다.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6)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처와 해결이 어려운 이유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처와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응답자의 다중응답 결과는 <표 IV-30>과 같다.

<표 IV-30>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처와 해결이 어려운 이유 다중응답

항목		빈도(N)	%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속력 미흡	22	12.1%
	신분상 불안 소극적 대응	24	13.2%
	학교관리자 조정 미흡	30	16.5%
	대처방법관련 법령 숙지 미흡	11	6.0%
	교육행정기관 합의 중용	7	3.8%
	교권침해여부 판단 곤란	16	8.8%
	학부모학생 신뢰관계 유지	23	12.6%
	사건처리 복잡 포기	13	7.1%
	특수교사니까라는 인식	36	19.8%
전체		182	100.0

<표 IV-30>에 나타난 바와 같이,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 대처나 해결 어려운 이유에 대한 다중응답에서 특수교사니까라는 인식이 36명(19.8%)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관리자 조정 미흡이 30명(16.5%)이었으며 이어서 학부모학생 신뢰관계 유지가 23명(12.6%),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속력 미흡이 22명(12.1%), 교권침해 여부 판단 곤란이 16명(8.8%), 사건처리 복잡 포기가 13명(7.1%), 대처방법 관련 법령 숙지 미흡이 11명(6.0%), 교육행정기관 합의 중용이 7명(3.8%)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교권침해발생 시 적극적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로 조사대상자는 특수교사니까라는 인식의 문제를 가장 높게 봤으며 다음으로 학교관리자의 조정미흡도 중요한 이유로 보았다. 다음으로 신분상의 문제나 학생

학부모와 신뢰관계 유지, 학교교권보호 위원회 구속력 미흡의 문제도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7)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우선 요소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우선요소 대한 조사대상자의 결과는 <표 IV-31>와 같다.

<표 IV-31>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 요소

	항목	빈도(N)	%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	42	46.7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	22	24.4
	피해대응 매뉴얼 제공	16	17.8
	분쟁해결위원회 구성	10	11.1
	전체	90	100.0

이상의 <표 IV-31>의 결과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사 중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우선요소에서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가 42명(46.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이 22명(24.4%)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피해대응 매뉴얼제공이 16명(17.8%), 분쟁해결위원회 구성이 10명(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대한 결과에서 교육경력 10년미만과 10년이상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p < .01$). 특수학급 교육경력 10년미만의 경우,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가 28명(31.1%)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이 15명(16.7%), 이어서 피해 대응 매뉴얼 제공이 12명(13.3%)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급 교육경력 10년이상의 경우,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가 14명(15.6%)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이 7명(7.8%), 이어서 피해 대응 매뉴얼 제공이 4명(4.4%)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교권침해 발생 시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에서 교육경력 10년미만과 10년이상 의 경우 모두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와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을 우선정책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와 결과를 <표 IV-32>에 제시하였다.

<표 IV-32> 특수학급 교육경력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구 분	교육경력			χ^2	p
	10년미만	10년이상	계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	28 31.1%	14 15.6%	42 46.7%	9.525	.008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	15 16.7%	7 7.8%	22 24.4%		
피해대응 매뉴얼 제공	12 13.3%	4 4.4%	16 17.8%		
분쟁해결위원회 구성	9 10.0%	1 1.1%	10 11.1%		
계	64 71.1%	26 28.9%	90 100.0%		

** $p < .01$

(2)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에 대한 응답에서 정교사와 기간제교사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였다($p < .05$). 정교사의 경우,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가 35명(38.9%)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이 17명(18.9%), 피해 대응 매뉴얼 제공이 15명(17.8%), 분쟁해결위원회 구성이 6명(6.7%)의 순이었다.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가 7명(7.7%)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이 5명(5.6%), 분쟁해결위원회 구성이 4명(4.4%), 피해 대응 매뉴얼 제공이 1명(1.1%)의 순이었다.

이상에서 볼 때, 정교사의 경우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에 대한 응답에서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 피해대응 매뉴얼 제공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기간제교사의 경우 교사존중사회적 분위기 강화, 교권법적용 교원우대정책, 분쟁해결위원회 구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표 IV-33>에 제시하였다

<표 IV-33> 직급에 따른 교권침해 발생 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지원체계 강화 우선요소

구 분	직급			x^2	p
	정교사	기간제교사	계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	35 38.9%	7 7.8%	42 46.7%	7.437	.017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	17 18.9%	5 5.6%	22 24.4%		
피해대응 매뉴얼 제공	15 16.7%	1 1.1%	16 17.8%		
분쟁해결위원회 구성	6 6.7%	4 4.4%	10 11.1%		
계	73 81.1%	17 18.9%	90 100.0%		

* $p < .05$

8)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주체에 대한 조사 대상자의 응답 결과는 <표 IV-34>와 같다.

<표 IV-34>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

항목		빈도(N)	%
교권침해 경험 교사 필요지원 제공 주체	교사	13	14.4
	학교	34	37.8
	교육청/관련기관	43	47.8
전체		90	100.0

이상의 <표 IV-3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특수교사 중 교권침해 경험 교사 필요 지원 제공 주체에 대한 생각에서 교육청/관련기관이 43명(47.8%)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가 34명(37.8%), 교사가 13명(14.4%)의 순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는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대한 필요 지원 제공 주체에 대한 생각은 교육청/관련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연령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

연령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에 대한 결과에서 30대미만과 30대이상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p < .05$). 30대미만의 경우, 학교가 19명(21.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교육청/관련기관이 17명(18.9%), 교사가 10명(11.1%)의 순으로 응답되었다. 30대이상의 경우는 교육청/관련기관이 26명(28.9%), 학교가 15명(16.7%), 교사가 3명(3.3%)이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볼 때, 연령별 교권침해 경험 교사 필요지원 제공 주체에서 30대미만의

경우는 학교를 응답하였고, 30대이상의 경우는 교육청/관련기관을 선정하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이를 <표 IV-35>에 제시하였다.

<표 IV-35> 연령에 따른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

구 분	연령			χ^2	<i>p</i>
	30대미만	30대이상	계		
교사	10	3	13	6.082	.048
	11.1%	3.3%	14.4%		
학교	19	15	34		
	21.1%	16.7%	37.8%		
교육청/관련기관	17	26	43		
	18.9%	28.9%	47.8%		
계	46	44	90		
	51.1%	48.9%	100.0%		

* $p < .05$

9)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사의 노력 사항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한 특수교사의 노력 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응답 결과를 <표 IV-36>에 제시하였다.

<표 IV-36>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특수교사의 노력 사항

항목	빈도(N)	%
전문성 향상 노력	39	43.3
교직윤리 확립	11	12.2
학부모 등 교육 주체 의견수렴	11	12.2
교권 관련 법령 숙지	27	30.0
학생지도 방법 개선	2	2.2
전체	90	100.0

전문성 향상 노력이 39명(43.3%)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권관

런 법령 숙지가 27명(30.0%)이었으며 이어서 교직 윤리 확립과 학부모들 교육 주체 의견수렴이 각각 11명(12.2%)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서 볼 때,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 특수교사 스스로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특수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을 첫 번째로 선택하였으며 다음으로 교권관련 법령 숙지를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사항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 사항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다중응답 결과는 교권보호업무 담당부서 설치가 29명(27.1%)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학교관리자 조정역할 강화가 23명(21.5%), 교권 전담 상담창구 마련이 21명(19.6%)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교육청과 학교분쟁조정기구 연계가 15명(14.0%),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가 11명(10.3%), 학운위 조정역할 기대가 8명(7.5%)의 순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사항에 대해 교권보호업무 담당부서 설치, 학교관리자 조정역할 강화, 교권전담상담창구 마련등의 순서로 응답하여 교권관련 업무와 학교의 조정, 그리고 전담 상담창구에 대한 중요성을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표 IV-37>에 제시하였다.

<표 IV-37>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사항

	항목	빈도(N)	%
	교권 전담상담창구 마련	21	19.6
	교권보호업무 담당부서 설치	29	27.1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한 학교의 노력사항	학운위 조정역할 기대	8	7.5
	학교관리자 조정역할 강화	23	21.5
	학생의 인성교육 강화	11	10.3
	교육청과 학교분쟁조정기구 연계	15	14.0
	전체	107	100.0

V. 논의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재직 중인 중등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고 교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을 알아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80개교의 특수학급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조사연구를 실시하였다. 본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논의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실태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대부분이 교권침해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교권침해에 대해 조사한 연구(도경만, 2015; 이화영, 2016) 결과에 비해 높게 나타나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이 교권침해 수준이 심각하다고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광주광역시 교육청에서 발표한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2018)의 내용과 일치한다.

교권침해를 경험한 교사들은 심각한 수치심, 죄책감, 후회, 분노 조절의 어려움, 스트레스와 두통, 수면장애, 교감신경 반응 등의 신체적 증상을 나타냈다(권오형, 2010; De Wet, 2010). 이러한 심리적 후유증은 해당 학생지도 포기나 다른 학생지도에 대한 의욕 상실로 이어지면서 교수 행동이나 훈육 및 지도 활동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Wilson, Douglas & Lyon, 2011). 이런 부정적인 결과가 교실붕괴, 교권침해 현상이라 본다면 교사들의 교권이 회복되지 않을 때 교권침해는 계속해서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교권침해로부터 교사를 보호하고 교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와 제도의 필요가 시급하다.

둘째, 특수학급 교사에 대한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은 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교총에서 발표한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활동 보고서(2019)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것과 같은 결과이며 선행연구(강명숙, 2010; 이화영, 2016; 장영란, 2004; 조수현, 2005)의 내용과도 일치한다. 또한 특수학급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유형은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받는 부당행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권침해가 주로 발생하는 시간은 학부모 면담과 학생지도가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교권침해 발생 장소는 교실, 학교 밖과 SNS가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급의 특수교사는 초등학교 교사와 유사하게 학급 안에서 일과의 대부분을 학생과 함께 지내고, 업무를 위한 자리 배정도 특수학급으로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부모 상담 시 상담실이나 교무실보다는 특수학급에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교권침해의 발생 장소가 교실이거나 퇴근 후 학교 밖, SNS가 높게 나타남은 당연해 보인다. 이는 선행연구(이화영, 2016; 최경실, 2015)와 같은 결과이다. 매년 조사되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권침해 관련 보고서에서 과거 5년 동안 교권침해의 주체로 학부모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줄어들지 않는 원인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현실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셋째, 교권침해 처리 상담 기관 및 단체의 인지 여부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와 광주광역시 교권 치유지원 센터, 전교조 교권 상담 마당 순서로 인지도가 높았으나 모른다고 대답한 교사가 있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0)에서 발표한 자료 중 2019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현황의 자료에서 총 11건의 상담사례만 이루어진 점을 보아 교권침해 처리 상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홍보와 연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은 교권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학교 현장을 무시한 교육정책이 높게 나왔다. 학생수를 변인으로 한 교권침해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수가 8명 미만인 경우에서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보통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 교권침해 발생 확률이 높음을 예상했을 때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원인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생으로부터의 교권침해 형태는 폭언 욕설, 폭행, 교사의 정당 지시 불이행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선행연구(이화영, 2016; 최경실, 2015)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배경 변인 중 여교사의 경우 남교사에 비해 가정교육의 약화가 학생이 교권침해를 발생하는 원인으로 비교적 높은 응답을 보였다. 이는 교사의 성별에 따라 학생의 교권침해 원인 중 가정교육의 약화에 대한 인식 정도 간 차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설문 응답 중 기타의견으로 학생으로부터 교권침해는 교권침해라고 인식하기보다 장애학생의 특성으로 보거나 특수교육의 특징으로 보아야 한다고 응답하기도 하였다.

여섯째,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부모로부터 교권침해 발생 시 주된 원인은 학생지도 등 교육권 요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교사에 대한 불신, 핵상 생활지도 불만 순으로 나타났다. 본연구결과와 교권보호 및 교직 상담활동 보고서(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9), 선행논문(이화영, 2016; 최경실, 2015; 정은혜, 2020)의 결과에서 보여주듯이 교권침해의 주체 중 학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 학생의 교육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 협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협력과정을 중요시 생각한 일부 특수교사가 취한 구체적 교육실천 방식인 ‘학교생활의 잣은 안내’와 같은 방법은 선행연구(이영건, 유은정, 2018)를 통해 실제로 중학교 특수학급에서 SNS를 통해 알림장으로 제공되어 장애학생 부모가 학교와 교사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을 보여주었다. 학부모의 긍정적 변화는 학습현장에 긍정적 변화를 가지게 되므로 이처럼 학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교권침해 비율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하고 성공적인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학교관리자로부터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은 권위적 교직문화가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교사 본연 업무 외 지시 부당지시가, 학급운영 및 교과수업의 부당한 요구 순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도경만, 2015)에서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배분이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특수학급에서 근무하는 교사보다 교권상실의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교사

직급에 의한 배경변인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과 다르게 도경만(2015)에서는 비
 정규 특수교사의 경우 정규교사에 비해 수업시수 과다, 성폭력 등에서 교권상실을
 경험하였다고 나타내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표본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
 학급 교사를 대상으로만 한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므로 추후 광주광역시
 전체 특수교사를 대상 직급에 따른 학교관리자로부터 교권침해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

2.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2019년 10월 17일 「교원지위법」을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고 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권 치유지원 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다. 이에 광주광역시에서는 교권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에 따라 ‘2020 교육활동 보호메
 뉴얼 - 응답하라 교권보호’를 마련하여 교권침해 피해 교사가 사안에 대응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의 시행에 따라 특수학급 현장에서의 교사들은 광주광역시
 교권보호 정책에 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필요로 하는 지원사항에 대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중·고등학교 특수
 학급 교사들의 인지여부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모른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의 비율
 을 보였다. 교사의 특히 30대 이하 특수교사의 경우 잘 모른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30대 이상 특수교사의 경우에는 알고 있다는 응답이 잘 모른다는 응답보
 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특수교육
 교직 경력과 총 교직 경력이 10년 미만인 교사들과 10년 이상인 교사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 10년 미만의 교사들은 잘 모른다는 응답이 높았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은 알고 있다는 응답이 잘 모른다는 응답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

다. 즉, 특수교사의 연령과 교직경력을 분석한 결과 나이가 어리고 경력이 적을수록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에 대한 인지 정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선행연구(도경만, 2015; 이화영, 2016; 조수현, 2005)의 교직경력이 많은 교사일수록 교권침해의 경험이 많다는 결과를 토대로 저경력 초임교사의 경우 교권보호와 관련된 연수를 받을 기회나 교권침해의 경험이 경력 많은 교사에 비해 적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많은 특수학급 교사들이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정법 시행이 얼마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교육청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다양한 연수 및 홍보 방법을 통해 교권침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개정된 교원법에 따른 광주광역시교육청의 교권보호 기본계획의 인식 정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 의견 반영정도에 대한 특수학급 교사들의 응답 내용을 살펴보면 ‘반영하지 않는다’가 절반에 가까워 특수교사 의견반영에 대한 부정적인 응답 특성을 보였다. 이는 특수교육 정책을 만드는 이들이 가지는 경직된 사고의 문제 즉, 특수교사의 숙명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현장의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김민제, 2019). 특히 특수교육경력 10년 미만 집단, 총교직경력 10년미만 집단에서 반영정도의 생각이 낮았고 교육경력에 10년 이상과 미만집단에 따른 평균차이 분석에서도 교육경력 10년미만 집단과 총교직경력 10년 미만 집단의 평균이 각각 2.75와 2.61로 낮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교사 의견반영 비율을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경력 10년 미만, 총교직경력 10년 미만 집단의 교사들의 의견반영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셋째, 교권침해 발생 시 해결 주체에 대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동료교원, 피해당사자, 학교관리자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료교사들이 교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며, 이에 대한 다양한 도움(Ray & Miller, 1994)을 줄 수 있으며, 교권침해 시 동료교사의 도움이 중요(강명숙, 2010; 이화영, 2016; 최경실, 2015)하다는 선행논문의 내용과 일치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교사의 배경변인 중 직급에서 기간제 교사의

경우는 학교관리자/보호위원회가 적극적 해결자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피해당사자라고 응답하였고, 동료교사라고 응답한 비율이 다른 응답에 비해 낮게 나온 것으로 보아 직급에 따라 동료교원에 대한 의존도가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넷째, 교권침해 발생 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대처방법에 대한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55.6%가 등을 직접 해결하는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집단별 분석에서 특수학급 교육경력과 총교직경력 10년 미만 집단에서는 직접 해결,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다.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집단에서는 직접해결 다음으로 관리자 보고 후 지시 따름이 두 번째로 많았다.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경우 교권침해에 대한 대처를 위한 노력은 주로 개인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저경력 교사의 경우 더욱더 그러하다. 교권침해의 경험이 교사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고려할 때 교사의 개인적인 수준의 대처 회복 노력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교권침해 대처 회복 프로그램 제공을 필요할 것이다(이화영, 2016). 또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기간제 교사의 경우 교권침해 발생 시 대처방안으로 동료교사의 도움보다는 학교관리자나 본인이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정교사의 경우 동료교원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에 비해 차이가 있어 특수 기간제 교사가 교직생활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이 없는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저경력 교사와 10년이상 교직경력을 지닌 교사들 사이에 인식 차이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세대별 인식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어 저경력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교육 환경에 대한 인식, 직무만족도, 동료교사 또는 보조원과의 상호작용 이외 여러 가지 다른 문제점들이 없는지 알아보고 10년 이상 교사들과의 인식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교권침해 발생 시 사후 대응 및 지원대책에 대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다중응답 결과에서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 제도 도입이 가장 높았다. 교권침해 시 교원이 우려하는 바는 신분상 불안으로 교권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며, 교권침해 사후 대응책으로 배상 및 중재 제도 도입으로 안정적이고

원만한 법적 해결을 원하고 있으므로 교원에게도 교권침해에 대하여 원스톱 업무가 될 수 있는 교원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정착해야 한다(최경실, 2015). 개정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를 비롯하여 서울, 경기, 인천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는 소속된 교원들에게 교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어 추후 이런 법률적인 도움이 특수교사들의 교권침해 발생을 줄이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여섯째, 교권침해 발생 시 특수교사가 적극적 대처나 해결 어려운 이유에 대해 특수교사니까라는 인식의 문제를 가장 높게 봤으며 학교관리자의 조정 미흡, 신분상의 문제나 학생과 학부모 신뢰 관계 유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속력 미흡의 문제도 어느 정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관리자의 조정능력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구속력의 미흡하다는 인식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수교사의 경우 교권침해 발생 시 개인적인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상황에 대처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의 기타의견 중 특수교사 스스로가 특수교사니까 장애학생으로부터의 폭언과 폭력은 당연히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실제로 장애학생들의 공격행동에 교권을 침해받은 사안이 발생하더라도 일부 특수교사나 학부모 등 교권보호위원들이 화해 및 중재의 역할의 관점에서 ‘장애학생들이니 그럴 수 있고, 특수교사니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 하기 때문에 특수교사들은 상처를 받고 교권침해를 경험하고 있다(김민제, 2019)고 응답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물론 특수교사는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장애학생들의 입장을 이해해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특수교사 한 개인의 인간적 권리와 다른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 최소한의 한계선은 정해질 필요가 있다(김민제, 2019).

일곱째,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가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다음으로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 피해 대응 매뉴얼제공,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해결위원회 구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배경 변인 중 교육경력 10년미만의 집단과 10년이상 집단의 경우, 직급에서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모두 교사존중 사회적 분위기 강화와 교권법 적용 교원 우대정책을 우선정책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렇듯 많은 특수교사들이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강화를 꾀한 이유는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특수학급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인 교권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

여덟째,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필요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는 교육청/관련기관, 학교, 교사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가 교권침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주체를 선택한 결과(이화영, 2016)와 같다가 다만, 교사변인 중 연령에 따라 30대 미만과 30대 이상의 집단으로 구분했을 때, 30대 미만 집단의 경우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필요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를 학교로 꼽은 교사가 많았다. 이는 연령이 어릴수록 필요한 지원을 가까운 곳에서 제공받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아홉째,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해 특수교사 취해야 할 노력 사항에 대하여 전문성 향상 노력이 가장 높은 응답으로 나타났다. 교사가 전문성을 지니고 교사의 역할 수행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였을 때 학생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본 것이다(김빛나라, 2012; 최경실, 2015). 특수교사의 전문성을 신장시켜 교육공동체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받는 교사가 되고자 하기 위한 노력이 교권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임을 교사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 위해 학교가 취해야 할 노력 사항에 대해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들의 인식 결과를 살펴보면 교권 업무담당부서 설치, 학교관리자 조정역할 강화가, 교권 전담 상담창구 마련 순으로 나타났다. 개정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에서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여 올해부터 전담부서가 학교 내 설치되며 학교장의 권한을 종전보다 강화하였다.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교권침해가 발생하여 교사(학교)의 요청시 One Stop Service System을 통해 교권담당 장학사와 변호사, 전문상담사로 구성된 현장지원팀인 교권부르미를 현장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즉시 방문 지원하여 신속 대응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현장에서 특수교사들이 이런 부분을 가장 필요로 했다는 것은 새로이 정비된 제도를 특수교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지, 현장에서 과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 따라서 매번 새로운 정책과 제도만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머물렀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개정 시행되는 교원지위법을 통해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교권보호 계획 및 매뉴얼을 교육 현장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필요해 보인다.

VI.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교육청 산하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교육 활동이 중에 겪는 교권침해의 실태와 이에 대한 지원요구를 파악하여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에 대한 정책 제안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교사들의 교권침해에 대한 실태 및 원인과 그 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른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권침해의 실태는 그 주체와 주체로부터 발생하는 원인, 정도, 장소, 시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권침해의 주체는 학부모가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학생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심각함의 정도는 대부분 보통 이상이라고 응답했고 심각하다는 응답이 그렇지 않다는 응답보다 5배 이상 높았다. 교사에 대한 폭언, 물리적 폭행으로 인한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교권침해가 이루어지는 장소로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현장인 교실이 대부분이었으며 교무실, 교장실, SNS 등의 기타의견도 있었다. 발생 시간은 수업 시간, 학부모 면담, 학생지도 등 다양한 형태로 골고루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퇴근 이후의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권침해의 주된 원인은 교권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이다. 학생으로부터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교사에 대한 불신과 교과 및 생활지도 불만이 그다음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로부터 발생하는 교권침해는 학생지도와 관련된 교육권 요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사에 대한 불신과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불만, 학교 운영 불만이 그 뒤를 이었으며 학부모들이 학생지도와 관련된 교육권을 요구하다가 교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현행법과 정책에 대한 교육, 의견수렴 등 다양한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보였다. 학교관리자로부터의 교권침해는 권위적인 교직 문화가

아직도 높은 결과치를 보이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권보호 정책에 대한 특수교사들의 인식 정도와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정리하여 볼 수 있다. 먼저 광주광역시교육청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알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특히 30대 이하의 교사집단에서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아 저경력교사 대상의 정책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교권침해 교육정책 수립 시 특수교사의 의견반영을 요구하는 응답도 높게 나왔다. 특수교육 교사의 교권침해 발생 시 처리 상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질문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광주광역시 교권 치유 지원센터, 전교조 교권 상담 마당의 순서로 응답하였다. 한편 모른다는 응답도 무시할 수 없는 수치를 나타내 교권침해 처리 상담 기관이나 단체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일선 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현재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법령 찾기, 교권침해 주체와 직접 해결, 교원단체 문의 경찰신고 등의 방법으로 직접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해결방법은 집단별로 그 방법이 달랐는데 교육경력과 총 교직경력 10년 미만 집단에서는 목인 또는 조치하지 않는다 였고, 교육경력과 총 교직경력 10년 이상 집단에서는 관리자 보고 후 지시를 따르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응답에서 특수교사라서라는 인식이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학교관리자 조정 미흡, 학부모와 학생과의 신뢰관계 유지를 위해 등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발생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지원방안으로는 우선 교권침해 예방과 보호를 위해 교사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경험 교사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할 주체로는 전체집단에서는 교육청과 관련 기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하위 집단별 분석에서는 30대 미만의 교사에서는 학교, 30대 이상에서는 교육청과 관련 기관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의 노력으로는 전문성 향상, 학교의 노력으로는 교권 업무담당부서의 설치와 학교관리자의 조정역할 강화되어야 한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특수교사로서 자부심과 자존감 향상을 위해 교육청과 관련 기관은 물론 학교 내 교권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 학교관리자의 조정역할에 대한 강화가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2. 연구의 제한점과 제언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2019년 교원지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에서 실정에 맞는 교권보호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학교에서 운영하도록 하였으나 시행 1년이 채 되지 않은 관계로 추후 교원지위법의 적용 결과 교권침해의 비율이 전에 비해 어떻게 달라졌는지 연구되어야 한다. 특히 광주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교권침해에 대한 자료는 찾아보기 힘들고 보고자료는 본 연구에서 조사한 수치와 매우 달랐다. 이는 교육청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이므로 지역 내 교권침해 실태에 관한 전수조사는 꼭 필요하다고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경우, 연구대상을 광주광역시 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특수학급 담당 교사들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지나치게 확대 적용하거나 해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의 표집된 인원의 수가 한정되어 χ^2 검증을 위해 리코딩 작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유사한 응답을 분류하여 묶어 결과를 도출하였기 때문에 비확률적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측정 도구에 있어서 교사와의 직접 면담이 아닌, 설문조사 방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방법상의 제한점이 있다. 설문조사는 응답자가 질문의 뜻을 제대로 이해했는지, 성실히 응답했는지에 대해 정확도를 파악하기 어려우며 특수학급 교사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없다. 또한 응답자의 반응 태도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수 있으며 이를 완전히 통제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참 고 문 헌

- 강병일, 김남진(2010). 특수학교 학생 및 교사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조사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277-304.
- 강명숙(2010). **교권 보호 방안 및 교권 보호 헌장 제정 연구**. 배재대학교 산학협력단.
- 광주광역시 교육청(2018). **2018 광주교육 종합실태조사**. 광주광역시 교육부(2012). **교권 보호 종합 대책 보도자료**(2012. 8. 28). 서울특별시: 교육부.
- 교육부(2019). **교권침해현황 보도자료**.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부.
- 국립특수교육원(2019). **2019 특수교육통계**. 충청남도: 국립특수교육원
- 교육부(2020c). **2020 특수교육통계**. 아산: 국립특수교육원.
- 권오형(2010).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의 폭력경험과 정신건강 및 소진과의 관계. 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일, 고혜경, 이윤희 (2012). 정서·행동장애학생의 폭력적 문제행동에 노출된 특수교사의 리질리언스 과정. **정서·행동장애연구**, 28(2), 97-110.
- 김민제(2019). 특수학교 교원의 교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장애학생의 공격행동에 의한 교권침해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부기(2002). 정서장애 특수학교 교원의 학교안전사고와 학교안전공제회에 대한 실태 및 인식.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빛나라(2012).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고등학교 교사의 교권 인식.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중(2018).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대처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소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성중, 황정하(2019).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장애인시설 종사자의 인식이 소진에 미치는 영향: 개입전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발달장애연구**, 23(2), 1-27.

- 김소연, 김영일(2007).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 실태, 사고처리 및 예방에 관한 교사의 인식 연구. **특수교육학연구**, 42(2), 125-147.
- 김재철(2011). 발달장애 학생의 폭력·공격성 행동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 및 대처 방식.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준석(2000). 현행법규의 교권에 관한 분석.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우현(2011).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우현, 김정연, 황지현(2013). 특수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특수교사의 상해 실태 조사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특수아동교육연구**, 15(1), 244-266.
- 김호연, 이경아, 윤상원(2016). 특수교사의 교권 침해 실태 및 개선 방안. **한국교원 교육학회 학술대회자료집**, 165-211.
- 도경만(2015). 특수교사의 교권상실 경험유형과 실태.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도경만, 박승철(2016). 특수교사의 교권상실 경험유형과 실태. **특수교육연구**, 23(1), 62-82.
- 매일경제신문(2020). 학생이 무서운 교사들... '교권 침해' 사례 지속. 7월 29일.
- 박근영 (2019). 교권침해 현황과 특성. **교육정책포럼**, 311(5).
- 신경희(1995). 교권확립을 위한 방안 탐색.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심응섭(2007). 초등교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 춘천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양경숙(2010). 특수교육보조원의 역할에 대한 교사와 특수교육보조원의 갈등 수준.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 양창훈(2020). 특수학교 교사의 교권침해에 따른 어려움과 극복요인에 대한 개념도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에듀프레스(2019). 교권침해 보험 3년새 9천명 가입.. 30~40대 여교사 가장 많아. 3월 15일.
- 오주석(2018). 교권침해에 관한 초등교사의 인식. 석사학위논문, 금오공과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소정(2014). 서울지역 특수학교 교사의 상해경험 양상과 영향 분석에 근거한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지원 방안 고찰.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영건, 유은정(2018). 중학교 특수학급 알림장(SNS 활용) 제공을 통한 장애학생 부모의 인식 및 태도 변화. **특수아동교육연구**, 20(1), 173-205.
- 이윤식(2001). **학교경영과 자율장학**. 서울: 교육과학사.
- 이진영(2011). 정신지체학교의 학교안전사고실태와 교사의 교육활동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화영(2016). 서울지역 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의 실태와 교권보호 지원방안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장영란(2004). 교권 경시 현상에 대한 교사 인식 연구. 한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은혜(2020). 중등학교 교사의 교권침해 및 교권보호방안에 관한 인식 분석- 인천광역시 중등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전혜인, 명경미, 이찬우, 정평강(2017). **특수학교 차원의 갈등관리 매뉴얼**. 아산 ; 국립특수교육원.
- 조기성, 정상우(2016).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교육문화연구**, 11(6), 33-57.
- 조기성(2019). 교권의 개념과 보호방안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조수현(2005). 초등학교 교사의 교권에 대한 인식 연구, 석사학위 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경실·주철안(2015). 교권침해 실태에 대한 중학교 교사의 인식 조사. **교육혁신연구**, 25(1), 76-95.
- 최인재(2013). 교권에 대한 교사 기대와 현실 간의 차이 연구 - 서울특별시 공립 중학교 교사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평택복지재단(2015). **평택시 발달장애인 도전적 행동 사례연구**. 경기도 : 평택복지재단.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19). 2018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결과발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교권강화국.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2020). 2019년도 교권보호 및 교직상담 활동보고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본부 교권강화국.
- 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충청북도: 한국교육개발원.
- 호남교육신문(2019). 광주시 교권침해 '모욕·명예훼손 최다'. 11월 19일.
- 한국교육신문(2019). 교원지위법 개정, 교권 보호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6월 7일.
- e-대학저널 (2020). 갈수록 심해지는 교권침해...교육활동 보호 절실. 5월 14일.
- De Wet (2010). Victims of educator-targeted bullying: a qualitative study. *South Africa Journal of Education*, 30, 189-201.
- Ray, E. B., & Miller, K. I. (1994). Social support, home/work stress, and burnout; Who can help?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0, 357-373.
- Wilson, C. M., Douglas, K. S., & Lyon, D. R. (2010). Violence against teachers: Prevalence and consequenc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6(12), 2353-2371
- Zohreh Esmaeili, Hosein Mohamadrezai., & Abdolah Mohamadrezai(2015). The role of teacher' s authority in student' s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 and Preactice*, 6, 1-15.

부 록

<부록>

특수학급 교사의 교권침해 실태현황과 지원방안에 대한 연구

안녕하십니까?

특수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선생님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등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특수학급에서 교사의 교권침해 경험 실태 및 교권보호에 대한 인식과 지원방안을 조사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수집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

본 설문의 모든 응답 자료는 무기명 통계 처리합니다. 또한 응답 결과는 통계법 제33조 및 제 3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비밀이 보장되며, 수집한 데이터는 연구 목적 이외 사용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건실한 연구를 진행할 것이며, 설문지를 작성을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문 응답에 소요되는 시간은 15분 정도입니다.

※본 설문지에 대한 의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화나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전공 김소현
지도교수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정은희

■ 선생님의 인적 사항에 대한 문항입니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이상
3. 특수학급 교육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4. 총 교육경력	① 5년 미만	② 5년~10년 미만	③ 10년~15년 미만	④ 15년 이상	
5. 직 급	① 교사	② 부장교사	③ 기간제 교사		
6. 근무학교(급)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7.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 수	① 1학급	② 2학급	③ 3학급이상		
8. 학생 수	① 4명 미만	② 4명이상-8명 미만	③ 8명 이상		

※ 각 문항의 질문에 해당하는 것을 하나만 체크해주세요.

특별히 중복체크 가능 이라고 표기된 항목만 중복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교권침해 경험 실태

1. 특수교사의 교권을 가장 많이 침해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 체크해주세요.

- ① 학생 ② 학부모 ③ 동료교원 ④ 학교관리자 ⑤ 교육행정기관 ⑥ 기타()

2. 특수학급 현장에서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

3. 특수학급에서 근무하시는 동안 교권침해를 경험하신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교권침해의 횟수는 몇 회입니까?

- ① 1~3회 ② 4~6회 ③ 7~9회 ④ 10회 이상 ⑤ 없다

4.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교권침해의 유형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신분피해(부당한징계) ② 학교 안전사고 ③ 학부모의 부당행위 ④ 명예훼손
 ⑤ 교직원간의 갈등 ⑥ 학생의 부당행위 ⑦기타()

5. 교권침해 처리 기관이나 단체들 중 알고 계신 기관을 표시해 주세요(중복표시 가능).

- ① 광주광역시 교권치유지원센터 ② 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③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교권/교직상담 ④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권상담마당
 ⑤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⑥ 잘 모르겠다 ⑦ 기타()

6. 특수학급에서 교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 ① 학생지도시 ② 학부모면담 ③ 수업시간중 ④ 쉬는 시간 ⑤ 퇴근이후
 ⑥ 기타()

7. 나는 다음과 같은 장소에서 교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중복표시 가능).

- ① 교실 ② 교무실 ③ 상담실 ④ 교장실 ⑤ 운동장 ⑥ 학교 밖
 ⑦ 디지털 공간(전화, 메시지, SNS 등 ⑧기타()

- ④ 약간 반영한다 ⑤ 매우반영한다 ⑥ 잘모른다

15. 교권침해 발생시 누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

- ① 피해당사자 ② 동료교원 ③ 학교관리자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 ⑤ 교육청
 ⑥ 교원단체 ⑦ 변호사 또는 경찰 ⑧ 기타()

16. 선생님께서는 교권침해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 ① 묵인 또는 조치하지 않는다 ② 법령을 찾아 자체 해결
 ③ 교권침해 주체와 직접적인 해결 ④ 관리자에게 보고 후 지시를 따름
 ⑤ 교원단체 자문 및 협조 ⑥ 동료교원 조언 및 협조
 ⑦ 변호사 자문 받아 대처 ⑧ 경찰 및 사법당국에 신고 및 대응
 ⑨ 기타()

17. 교권침해의 사후 대응책 및 가장 필요한 지원부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① 법률 상담 ② 특별휴가 ③ 사고에 따른 배상 및 중재제도 도입
 ④ 변호사 무료상담 ⑤ 교육청 지원 ⑥ 치유 심리상담 프로그램제공 및 치료
 ⑦ 기타()

18. 교권침해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나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속력 미흡 ② 신분상 불안으로 소극적 대응
 ③ 학교관리자 조정역할 미흡 ④대처방법 또는 관련법령 숙지 미흡
 ⑤ 교육행정기관 합의 중용 ⑥교권침해여부 판단 곤란
 ⑦ 학부모 및 학생과 신뢰관계 유지 ⑧사건처리가 복잡하여 포기
 ⑨ ‘특수교사니까’ 라는 인식 ⑩ 기타()

19.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② 교권법 엄격 이행 및 제재 ③ 피해 대응 매뉴얼 제공
 ④ 정부의 교원우대정책 ⑤ 교원단체의 지원 강화 ⑥교권침해 주체 교육
 ⑦ 특수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분쟁 해결위원회 구성 ⑧ 기타()

20. 교권침해를 경험한 선생님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주체는 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교사 ② 학교 ③ 교육청 ④ 관련기관 ⑤ 기타()

21. 교권침해 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 특수교사 스스로가 노력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전문성 향상 노력 ② 교직윤리 확립 ③ 학부모등 교육주체 의견 수렴
 ④ 교권 관련 법령 숙지 ⑤ 학생 지도 방법 개선 ⑥ 기타()

22. 교권침해예방 및 교권보호를 위해 학교가 주체가 되어 노력해야 하는 사항?

- ① 교권전담상담(변호사)창구 마련 ② 교권업무 업무 담당 부서 설치
 ③ 학운위 조정역할 확대 ④ 학교관리자 조정역할 강화
 ⑤ 학생등 인성교육 강화 ⑥ 교육청과 학교분쟁조정기구 연계
 ⑦ 기타()

23. 위 문항 이외에 교권침해나 교권보호 정책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일이나 건의하고 싶은 의견을 적어주세요. 논문에 참고하겠습니다